

2020년도 문화재위원회

**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**

▣ 회의일시 : 2020. 10. 15(목), 14:00 ~

▣ 장 소 :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

▣ 안 건 : 총 12건

- 심의 7건(서울 동관왕묘 주변 대한적십자사 중앙봉사관 화장실 리모델링 등)
- 검토 4건(산청 대원사 다층석탑 주변 봉상루 증·개축 설계 검토 등)
- 보고 1건(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)

문 화 재 위 원 회

# 목 차

## 【심의사항】

1	서울 동관왕묘 주변 대한적십자사 중앙봉사관 화장실 리모델링	공개
2	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 주변 화장실 신축	공개
3	여주 창리 삼층석탑 주변 종교집회시설 부지 조성	공개
4	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이전 설치	공개
5	상주 복용동 석조여래좌상 주변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(2차, 재심의)	공개
6	서울 승례문 주변 세종대로 보행친화공간 재편 사업(변경허가)	공개
7	서울 승례문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(안)(재심의)	공개

## 【검토사항】

8	산청 대원사 다층석탑 주변 봉상루 증·개축 설계 검토	공개
9	양산 통도사 유물 수장고 건립공사 설계 검토	공개
10	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주변 진입교량 재설치 설계 검토	공개
11	국가지정문화재(국보·보물)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(안) 검토	공개

## 【보고사항】

12	<p>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주 계룡산 중악단 주변 단독주택 진출입로 개설</li> <li>- 고령 장거리 암각화 주변 자원순환시설 신축</li> <li>- 안동 개목사 원통전 주변 도로선형개량 공사(변경허가)</li> <li>-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(변경허가)</li> <li>- 청도 석빙고 주변 석빙고, 청도읍성 주변 정비사업 실시</li> <li>-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주변 탄금호 일원 상징조형물(포토존) 제작 설치(2차)</li> </ul>	공개
----	--	----

-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정법궁 철거 후 대응 보전 건립(변경허가)
- 청도 봉기리 삼층석탑 주변 동,식물관련시설(축사) 양성화
- 안성 석남사 영산전 주변 진입로 확포장 공사(재심의)
- 임실 진구사지 석등 주변 농막(1동) 설치(2차)
- 사천 홍사리 매향비 주변 양봉시설 신축 및 부지조성

## 【심의사항】

안건번호 건축 2020-10-001

### 1. 서울 동관왕묘 주변 대한적십자사 중앙봉사관 화장실 리모델링

#### 가. 제안사항

서울 종로구 소재 보물 제142호 「서울 동관왕묘」 주변에 대한적십자사 중앙봉사관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고자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에 대한적십자사 중앙봉사관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 -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해당됨.

#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 : 서울 동관왕묘
  - 소재지 : 서울 종로구 송인2동 238-1
  - 지정일 : 1963. 01. 21.
- (3) 신청내용
  - 사업위치 : 서울 종로구 송인동 238-2 외 1필지
   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문화재에서 9.7m
  - 사업내용 : 외부진입로 설치 및 건물 용도변경 1식
    - 건축면적 : 394.63m<sup>2</sup>(변경없음)
    - 연면적 : 1,106.48m<sup>2</sup>(변경없음)
    - 규모 : 지하1층, 지상2층(변경없음)
    - 최고높이 : 7.7m(변경없음)

※ 변경사항

1) 공중화장실 진입로 설치 1식(외부경관 변경)

2) 지상1층 용도변경

기존 : 노유자시설 357.75m<sup>2</sup>

변경 : 노유자시설 305.03m<sup>2</sup>, 1층 근린생활시설(공중화장실) 52.72m<sup>2</sup>

□ 서울 동관왕묘 보수사업 추진현황

○ 총사업비 : 3,626백만원

(15년 428백만원, 16년 520 백만원, 17년 749백만원, 18년 509백만원,  
19년 1,164백만원, 20년 256백만원)

○ 추진현황

- 재실 복원 및 주변정비 완료 : '16.11월

- 지반 절토 및 건물 기단 보수 완료 : '17.12월

- 화계 및 배수로 정비, 연지복원 완료 : '19.6월

- 정전내부 현관(2기) 해체 수리, 토상 1기 보존처리, 감실 및 정전 내부 세척 완료 : '19.11월

- 내부 담장 복원 , 감실 보수 등 완료 : '20.8월

- 내부지반 복원, 정전·동무·서무 건물 보수, 어막대 주변 정비 완료 : '20.7월

○ 향후계획

- 외삼문 및 외곽담장 보수 공사 : '20.12월 완료 예정

- 어막대 복원 관련 화장실 철거를 위해 중앙봉사관 화장실 리모델링 : '21년 추진

- 화장실 철거 및 어막대 복원 : '21년 추진

## 2.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 주변 화장실 신축

### 가. 제안사항

전남 장성군 소재 보물 제1346호 「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」 주변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 -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“개별심의”에 해당됨.

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 :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
  - 소재지 :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대응전
  - 지정일 : 2002. 09. 25.
- (3) 신청내용
  - 사업위치 :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
   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문화재에서 470m
  - 사업내용 : 화장실 신축 1식

구분	기존 건물(철거)	금차
건축면적	- 지상1층 : 67.1m <sup>2</sup>	지하1층 : 97.2m <sup>2</sup> 지상1층 : 97.2m <sup>2</sup>
평면	“—”자형 평면	“ㄱ”자형 평면

구분	기존 건물(철거)	금차
주 칸	정면2칸 측면2칸	정면5칸 측면3칸
양 식	민도리집	민도리집
구 조	3량가구 - 지상1층 : 콘크리트구조	5량가구 지하1층 :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: 한식목구조
지 붕	맞배지붕	우진각지붕
기 단	자연석기단	화강석기단

### 3. 여주 창리 삼층석탑 주변 종교집회시설 부지 조성

#### 가. 제안사항

경기 여주시 소재 보물 제91호 「여주 창리 삼층석탑」 주변에 종교집회 시설 부지를 조성하고자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에 종교집회시설 부지 조성을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 -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“개별심의”에 해당됨.

#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 ○ ○
- (2) 대상문화재 : 여주 창리 삼층석탑
  - 소재지 : 경기 여주시 상동 132번지
  - 지정일 : 1963. 01. 21.
- (3) 신청내용
  - 사업위치 : 경기 여주시 상동 65-18번지 외 3필지
   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보호구역에서 78m
  - 사업내용 : 종교집회시설 부지(농구장, 주차장 등) 조성
    - 자연석쌓기(H=2.0미만) : 50m(흙쌓기 : 86㎡)
    - 돌쌓기(H=3.0m) : 18m
    - 흙관 매설(D300mm) : 50m
    - 집수정(600\*600) 2개소

## 4.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이전 설치

### 가. 제안사항

전남 광주시 소재 국보 제103호 「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」을 이전하고자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를 이전 전사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- 국립광주박물관 내 전시되어 있는 문화재임.

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 ○ ○
- (2) 대상문화재 :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
  - 소재지 : 광주 북구 매곡동 산83-3 국립광주박물관
  - 지정일 : 1962. 12. 20.
- (3) 신청내용
  - 위치 : 광주 북구 매곡동 산83-3 국립광주박물관
  - 내용 : 박물관 내 문화재 이전(1층 로비 → 2층 역사문화실)

#### <이전절차>

- 1) 1차 3D스캔 : 광대역 스캔(현황기록 및 기울기 측정)
- 2) 해체 및 운반 : 크레인으로 부재별 해체, 포장 및 안전한 운반
- 3) 임시 격납 : 박물관 수장고에 임시 격납
- 4) 2차 3D스캔 : 부재의 노출면, 상부, 측면 등 정밀 스캔
- 5) 면진대 설치 : 이전될 장소 면진대 제작 및 설치
- 6) 석등 이전 설치 : 3D 스캔자료를 활용하여 2층 역사문화실 내 재설치

## 5. 상주 복용동 석조여래좌상 주변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(2차, 재심의)

### 가. 제안사항

경북 상주시 소재 보물 제119호 「상주 복용동 석조여래좌상」 주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축 하고자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 -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4구역 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” 및 공통사항 “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”에 해당됨.
- ※ ‘20년 문화재위원회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(2020.05.21.) : 부결
  - 역사문화경관 저해(층수 높아 위압적임)
- ※ ‘20년 문화재위원회 제9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(2020.09.17.) : 보류
  - 현지조사, 허가사례 검토

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 : 상주 복용동 석조여래좌상
  - 소재지 : 경북 상주시 서성동 163-48번지
  - 지정일 : 1963. 01. 21.
- (3) 신청내용
  - 사업위치 : 경북 상주시 서성동 121-1번지 외 5필지
   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보호구역에서 120m

○ 사업내용 :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

구분	'20.05.21. (부결)	금 차	비고
대지면적	2,508m <sup>2</sup>	좌동	-
건축면적	1,520.902m <sup>2</sup>	좌동	-
연면적	22,721.7993m <sup>2</sup>	22,049.6101m <sup>2</sup>	감 672.1892m <sup>2</sup>
세대수	138세대	132세대	
층수/ 최고높이	지하2층, 지상27층 / 91.8m	지하2층, 지상26층 / 81.2m	감 1층/ 감 10.6m
구조	철근콘크리트	철근콘크리트	

※ 경관심의 전(접수 시) 사업내용

- 대지면적 : 2,749m<sup>2</sup>
- 건축(연)면적 : 1,260.51m<sup>2</sup>(26,519.21m<sup>2</sup>)
- 구조 : 철근콘크리트구조
- 층수 : 지하2층, 지상35층
- 높이 : 110.4m

=> '20년 1월 2차 자체회의 결과 보류 : 자료보완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

- 경관 심의 결과 및 자료 제출
- 신청사업과 문화재와의 관계자료(주변 현황 등) 제출

※ 경상북도 경관위원회 심의 “조건부 의결”

- 주차타워 설치에 따른 주변과의 부조화 및 입주민의 조망권 저해 보완
- 상가외부 전면유리 설치에 따른 간판설치계획 보완
- 건축물 외부 색채계획 재검토(그라데이션 등)

## 6. 서울 송례문 주변 세종대로 보행친화공간 재편 사업(변경허가)

### 가. 제안사항

서울 중구 소재 국보 제1호 「서울 송례문」 주변 세종대로 보행 친화공간 재편사업을 추진하고자 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주변에 보행 친화공간 재편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  - 문화재 보호구역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3구역에 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”에 해당됨.
- ※ ‘20년 문화재위원회 제9차 건축분과위원회 심의결과(2020.06.18.) : 조건부가결
  - 송례문 외곽 울타리는 1.2m 내외의 송례문과 어울리는 디자인 계획이 되도록 함
  - 사업 추진 시 담당부서와 지속 협의할 것

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 : 서울 송례문
  - 소재지 :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29
  - 지정일 : 1962. 12. 20.
- (3) 신청내용
  - 사업위치 : 세종대로사거리 ~ 서울역(이격거리 : 보호구역 내외)
  - 총사업비 : 242.8억원

○ 사업내용 : 세종대로 보행친화공간 재편 사업

기 허가사항('20.06.18.)	금회 신청 사항
<p>○ 세종대로(세종대로사거리~서울역)구간 (1.5km)에 대하여 보행로 폭 확장, 자전거 도로 신설, 포장·조경·기타 시설물 설치 등</p> <p>※ 허가조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승레문 외곽 울타리는 1.2m 내외의 승레문과 어울리는 디자인 계획이 되도록 함</li> <li>- 사업 추진 시 담당부서와 지속 협의 할 것</li> </ul>	<p>○ 보호구역 및 허용기준 3구역 내 수목 추가 식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호구역 내 : 은행나무 4주</li> <li>- 허용기준 3구역 내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소나무 46주, 느티나무 27주, 배롱나무 5주</li> <li>· 산수유 6주, 산딸나무 3주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허가조건에 대한 보완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승레문 주변 외곽 울타리 디자인 검토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와(진회)색 계열 1.2m 높이</li> <li>- 생울타리 높이 0.9~1.2m, 폭 1m 내외</li> </ul> </li> <li>○ 추가 CCTV 4개소에 스피커 통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통신 케이블 매설 위한 굴착 (0.6m×0.6m×6m)</li> </ul> </li> <li>○ 승레문 정문, 후문 자동문 설치</li> </ul>

## 7. 서울 숭례문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(안)(재심의)

### 가. 제안사항

서울 중구 소재 국보 제1호 「서울 숭례문」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(안)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국보 「서울 숭례문」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.

※ '20년 문화재위원회 제9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(2020.09.17) : 보류

- 현지조사 필요
- 주변 건축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조정안 제시

### 다. 주요내용

(1) 조정대상 : 서울 숭례문

- 소재지 :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29
- 지정일 : 1962. 12. 20.

(2) 내용 :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

연번	유형	지정번호	문화재명	허용기준	
				지형도면	범례표
1	국보	1	서울 숭례문	허용기준 변경(2구역→3구역)	변경없음

(3) 향후계획 :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

라. 참고사항(관계전문가 의견 <2020.09.15. / 문화재위원 ○○○>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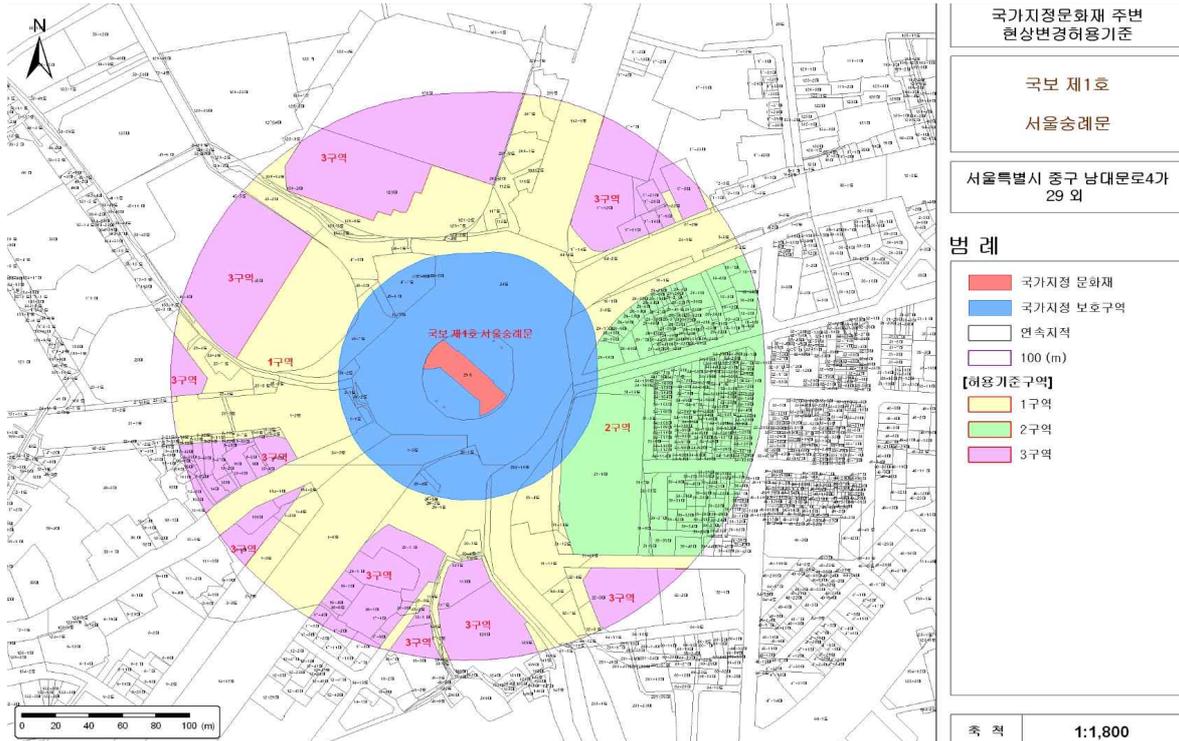
- 송례문 주변 허용기준 2구역 내 위치한 남대문 상가 중 대형빌딩(롯데손해보험) 동측에 위치한 상가는 송례문의 조망이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.
- 송례문 맞은편, 남대문 상가 출입부는 송례문에서 직접적인 조망이 가능한 측면이 있어, 주변 상권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필요함.

[붙임] 허용기준 조정 전·후 각 1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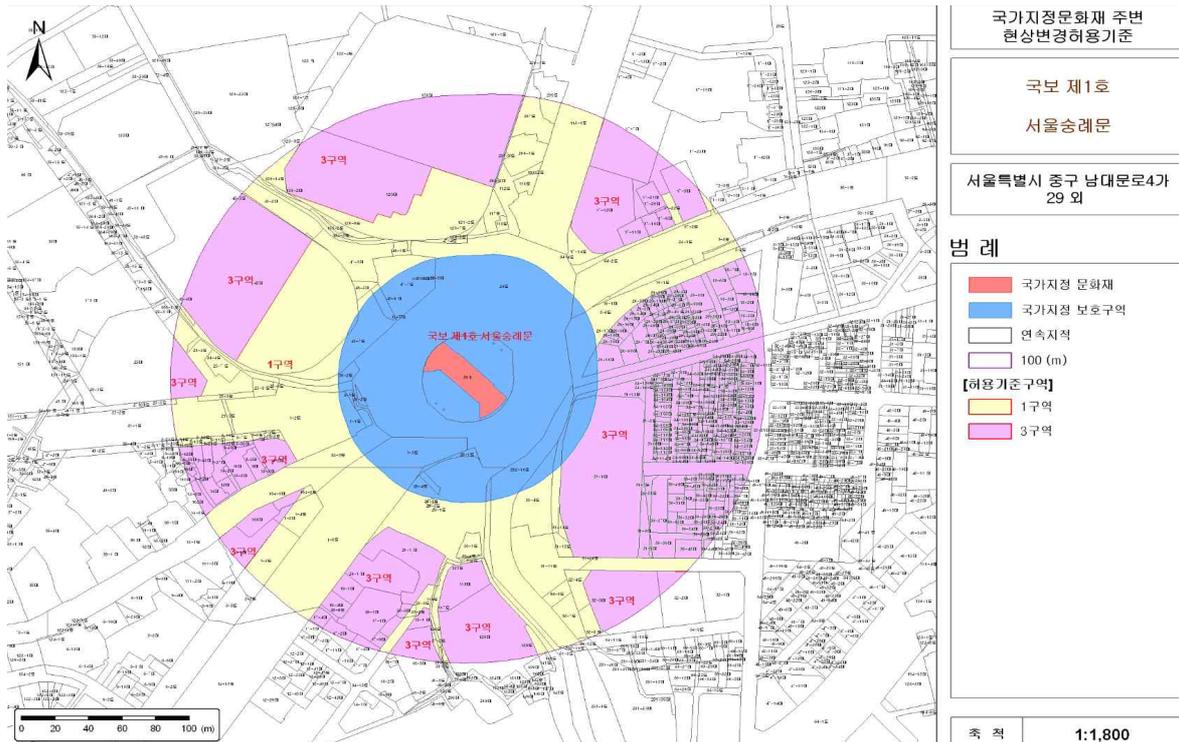
[붙임]

국보 제1호 “서울 송례문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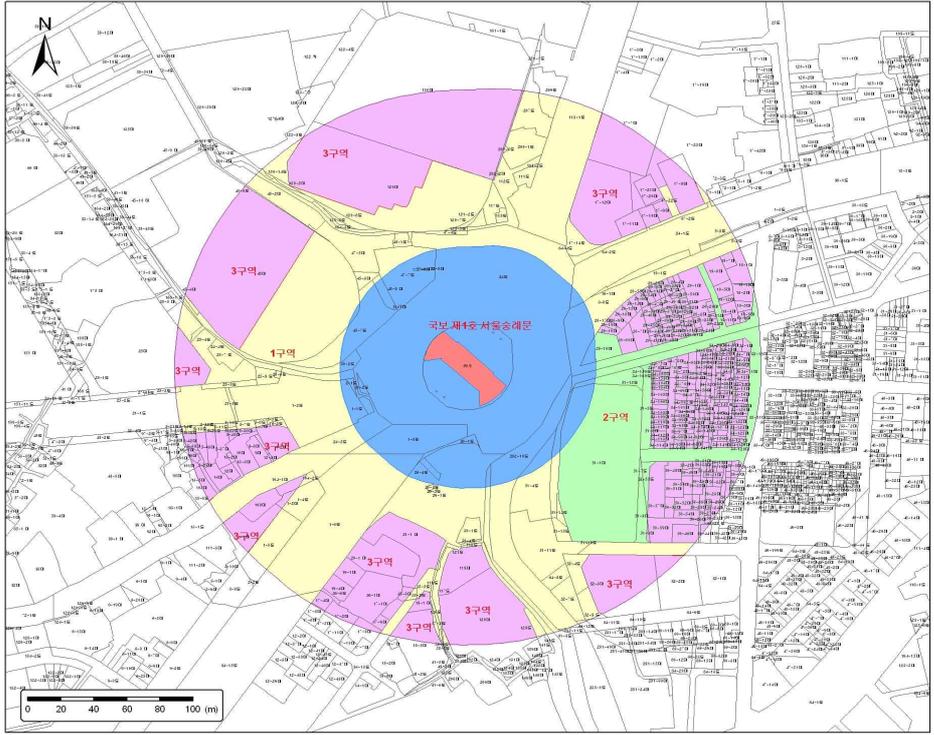
【 당 초 】



【 변경 1안 】



【 변경 2안 】



국가지정문화재 주변  
현상변경허용기준

국보 제1호  
서울총례문

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 
29 외

범례

- 국가지정 문화재
- 국가지정 보호구역
- 연 속지적
- 100 (m)

【허용기준구역】

- 1구역
- 2구역
- 3구역

축척 1:1,800

▣ 국보 제1호 “서울 송례문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【 범례 표 (변경없음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원지형 보존		
제2구역	○ 최고높이 11m(3층) 이하	○ 최고높이 15m(3층) 이하	
제3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</li> <li>○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 경사지를 성·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li> <li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li> </ul>		

## 【검토사항】

안건번호 건축 2020-10-008

### 8. 산청 대원사 다층석탑 주변 봉상루 증·개축 설계 검토

#### 가. 제안사항

‘20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남 산청군 소재 보물 제1112호 「산청 대원사 다층석탑」 주변 봉상루 증·개축 설계 안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나. 제안사유

- ‘20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남 산청군 소재 보물 「산청 대원사 다층석탑」 주변 봉상루 증·개축 설계 안과 관련 검토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.

#### 다. 주요내용

##### (1) 대상문화재 : 산청 대원사 다층석탑

- 소재지 : 경남 산청군 삼장면 유평리 1번지 대원사
- 지정일 : 1992. 01. 15.

##### (2) 사업내용

- 사업지침 :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봉상루 증·개축 설계를 실시한다.
- 사업예산 : 100,000천원(국비 70,000천원, 지방비 30,000천원)
  - ※ '21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사전통지 : 대원사 봉상루 이건 1,200,000천원(국비 840,000천원, 지방비 360,000천원)
- 사업위치 : 경남 산청군 삼장면 유평리 1번지 대원사

○ 세부내용

구분	기존	증·개축 안	비 고
규 모	정면3칸, 측면2칸	정면5칸, 측면2칸	
가구형식	1출목 3익공	1출목 3익공	
지붕형태	겹처마, 팔작지붕	겹처마, 팔작지붕	
평면형태	2층 누각	2층 누각	누하진입
면 적	42.91㎡(13.0평)	91.8㎡(27.7평)	
전체높이	9.47m	10.08m	
자연석 석축	69.2m(H=0.8~2.5m) 해체 80.6m(H=1.65~2.7m) 설치		
한식담장	18.4m(H=1.2m) 막돌담장 해체 36.0m(H=0.9m) 와편담장 신설		
자연석 계단	W=2.6m, 2개소 해체 W=3.3m, 2개소 신설		
수목 정비	수목이식 및 식재 30주 (전통수종으로 정비)		

## 9. 양산 통도사 유물 수장고 건립공사 설계 검토

### 가. 제안사항

2020년도 보물 제738호 「문수사리보살최상승무생계경」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산 통도사 유물 수장고 건립 설계(안)을 부의하오니,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2020년도 「보물 제738호 문수사리보살최상승무생계경」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유물 수장고 건립 설계(안)의 적정성을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.

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양산시장
- (2) 대상문화재 : 문수사리보살최상승무생계경
  - 소재지 :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38번지, 통도사
  - 지정일 : 1982. 11. 09.
- (3) 신청내용
  - 사업위치 :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609-11 일원
   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역사문화환경구역으로부터 570m
  - 2020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내용 \* 총사업비(추정) 110억

교부연도	사업내용(지침)	교부예산		비고
		국비	지방비	
2020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문화재 보존환경에 적합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적정 규모의 통도사 유물 수장고 건립 설계를 실시한다.</li> </ul>	400백만원		국가검토 (유형문화재과 승인사항)
		28	12	

- 사업내용 : 양산 통도사 수장고 건립
  - 건축면적(연면적) : 2,637.72㎡(3,638.18㎡)
  - 구조 : 철근콘크리트구조(지하1층~지상1층)
  - 건축양식 / 층고 : 자연지형을 반영한 랜드 스케이프 양식 / 9m
  - 참고사항 : 기존 불법건축물 철거 후 해당 부지에 조성
    - \* 불법건축물 현황 : 된장판매소(137.72㎡), 운영사무실(38.31㎡)
- 건립 예정 수장고 문화재 이전 개요
  - 통도사 소장 문화재 현황
    - 지정문화재 : 80건 1,090점(국보 1건, 보물 26건, 시도지정 40건, 문화재 자료 13건)
    - 비지정문화재 : 지류문화재 28,982점 등 38,916점
  - 건립 예정 수장고 이전 문화재 : 불화, 목판류 등 1,470점

**[참고] 주요 의견 분석**

구분	주요 내용
위 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주불전 영역에서 가급적 이격된 위치(○○○ 위원)</li> </ul>
경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주변 경관과 서운암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주요 시설을 지하화한 형태는 바람직(○○○ 위원)</li> <li>■ 주변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계획으로 하는 것이 타당(○○○ 위원)</li> </ul>
규 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의견 없음</li> </ul>
보존환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하공간이 습하지 않도록 하고 환경조절장치에 만전을 기할 것(○○○ 위원)</li> <li>■ 수장고의 특성상 습기를 비롯한 제반여건이 원활하게 시설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반영을 철저히 할 것(○○○ 위원)</li> <li>■ 복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실내환경의 취약점인 환기불리, 결로 발생, 복토 부위의 유실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(○○○ 위원)</li> </ul>

## 10.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주변 진입교량 재설치 설계 검토

### 가. 제안사항

‘20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물 제185호 「부여 무량사 오층석탑」 주변 진입교량 재설치 공사 설계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‘20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「부여 무량사 오층석탑」 주변 진입교량 재설치 공사 설계안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.

### 다. 주요내용

(1) 대상문화재 :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

- 소재지 : 충남 부여군 무량로 203(외산면)
- 지정일 : 1963. 01. 21.

(2) 사업내용

- 사업위치 :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131
  - 문화재와 이격거리 : 보호구역에서 110m
- 사업예산 : 2020년 40백만원(국비 28백만원, 지방비 12백만원)
  - ※ 2021년 사전통지 예산 : 660백만원(국비 462백만원, 지방비 198백만원)
- 사업지침 :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무량사 진입교량 개축 설계를 실시한다.
  - ※ 사업구분 : 지방검토
- 사업내용 : 진입교량 재설치
  - 교량 규모 : H=6.0m, B=5.0m, L=10.0m
  - 구조 : 라멘콘크리트 구조
  - 마감재 : 화강석 판석 붙임

- 토류벽(가시설공사) : H=6.0m, L=14.0m
- ‘가’석축(거친돌 허튼층 쌓기) : H=3.0~4.0m, L=21.0m
- ‘나’석축(거친돌 허튼층 쌓기) : H=2.5~4.0m, L=17.6m
- 석재보(거친돌 설치) : H=0.45~1.0m, B=0.6m, L=0.6~1.0m(전체길이 : 10.2m)
- 배수로 설치 : H=0.25m, B=0.35m, L=4.0m

## 11. 국가지정문화재(국보·보물)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(안) 검토

### 가. 제안사항

국보 제84호 「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」 등 38건 국가지정문화재(국보·보물) 주변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(완화)(안)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국가지정문화재(국보·보물)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(완화)(안)의 타당성 및 합리성 등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.

### 다. 주요내용

#### (1) 추진경위

- 「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」(훈령 제449호, '17.12.18) 개정 등을 반영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(완화).

(2) 대상문화재 : 국보 제84호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등 38건

유형	지정번호	문화재명	허용기준	
			지형도면	범례표
국보	84	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</li> <li>○ 제1구역→제3구역 일부 완화</li> </ul>	1구역(원지형 보존 → 개별심의), 2구역(층수삭제), 3구역 신설, 공통사항 조정
국보	130	구미 죽장리 오층석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</li> <li>○ 제1구역→제3구역 일부 완화</li> </ul>	1구역(원지형 보존 → 개별심의), 2구역(층수삭제), 공통사항 조정

유형	지정 번호	문화재명	허용기준	
			지형도면	범례 표
보물	10	강화 장정리 오층석탑	○ 제1구역→제2구역 일부 완화	공통사항 조정 등
보물	615	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		
보물	18	청양 서정리 구층석탑	○ 제2구역→제3구역(신설) 일부 완화	1구역(원지형보존→ 개별심의), 2구역(층수삭제), 3구역 신설, 공통사항 조정
보물	143	서산 개심사 대웅전	○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○ 제1구역→제3구역 일부 완화	1구역(원지형 보존 → 개별심의), 2구역(층수삭제), 3구역 신설, 공통사항 조정
보물	162	청양 장곡사 상 대웅전	○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○ 제1구역 일부 해제	1구역(원지형 보존→개별심의), 공통사항 조정
보물	181	청양 장곡사 하 대웅전		
보물	188	의성 관덕리 삼층석탑	○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○ 제1구역→제3구역 일부 완화	1구역(원지형 보존 → 개별심의), 2구역(층수삭제), 3구역 신설, 공통사항 조정
보물	189	칠곡 송림사 오층전탑	○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○ 제1구역→제4구역 일부 완화	1구역(원지형 보존 → 개별심의), 2,3구역(층수삭제), 공통사항 조정
보물	197	청양 읍내리 석조여래삼존입상	○ 제1,2,3,4구역 일부 조정	1구역(신축불가 → 개별심의), 2,3구역(층수삭제), 공통사항 조정
보물	296	김천 청암사 수도암 석조보살좌상	○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○ 제1구역→제2구역 일부 완화	1구역(원지형 보존 → 개별심의), 2구역 신설, 공통사항 조정
보물	297	김천 청암사 수도암 동·서 삼층석탑		
보물	307	김천 청암사 수도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		

유형	지정 번호	문화재명	허용기준	
			지형도면	범례 표
보물	372	진주 용암사지 승탑	○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○ 제1구역→제3구역 일부 완화	1구역(원지형 보존 → 개별심의), 2구역(층수삭제), 공통사항 조정
보물	373	의령 보천사지 삼층석탑	○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○ 제1구역→제4구역 일부 완화	1구역(원지형보존 → 개별심의), 2,3구역(층수삭제),
보물	472	의령 보천사지 승탑	○ 제1, 2, 3구역 및 공통사항 허용기준 변경 ○ 제4구역 허용기준 신설	4구역 신설, 공통사항 조정
보물	376	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	○ 제2구역과 제3구역 통합 및 완화	3구역 삭제, 공통사항 조정
보물	407	천안 삼태리 마애여래입상	○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○ 제1구역→제2구역 일부 완화	1구역(원지형 보존 → 개별심의), 2구역 신설, 공통사항 조정
보물	429	경산 불굴사 삼층석탑	○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○ 제1구역→제3구역 일부 완화	1구역(원지형 보존 → 개별심의), 2구역(층수삭제), 3구역 신설, 공통사항 조정
보물	467	밀양 표충사 삼층석탑	○ 제1구역→제2구역 일부 완화	1구역(원지형보존 → 개별심의), 2구역 신설, 공통사항 조정
보물	470	구미 도리사 석탑	○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○ 제1구역→제2구역 일부 완화	1구역(원지형 보존 → 개별심의), 2구역 신설, 공통사항 조정
보물	504	영광 신천리 삼층석탑	○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○ 제1구역→제2구역 일부 완화	1구역(원지형 보존 → 개별심의), 공통사항 조정
보물	584	구례 윤문효공 신도비	○ 제1구역→제3구역 일부 완화	공통사항 조정 등
보물	655	칠곡 노석리 마애불상군	○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○ 제1,2구역→제3구역 일부 완화	1구역(원지형 보존 → 개별심의), 2구역(층수삭제), 3구역 신설, 공통사항 조정

유형	지정 번호	문화재명	허용기준	
			지형도면	범례 표
보물	675	영천 화남리 삼층석탑	○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○ 제1구역→제3구역 일부 완화	1구역(원지형 보존 → 개별심의), 2구역(층수삭제), 3구역 신설, 공통사항 조정
보물	676	영천 화남리 석조여래좌상		
보물	804	순천 정혜사 대웅전	○ 제1구역→제2구역 일부 완화	1구역(원지형 보존 → 개별심의), 2구역 신설, 공통사항 조정
보물	831	순천 동화사 삼층석탑	○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○ 제1구역→제2구역 일부 완화	1구역(원지형 보존 → 개별심의), 공통사항 조정
보물	832	영주 성혈사 나한전	○ 제1구역→제2구역 일부 완화	1구역(원지형 보존 → 개별심의), 2구역 신설, 공통사항 조정
보물	907	경주 남사리 삼층석탑	○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○ 제1구역→제2,3구역 일부 완화	1구역(원지형 보존 → 개별심의), 2구역(층수삭제), 3구역 신설, 공통사항 조정
보물	943	보성 우천리 삼층석탑	○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○ 제1구역→제2구역 일부 완화	1구역(원지형 보존 → 개별심의), 공통사항 조정
보물	945	순천 금둔사지 삼층석탑	○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○ 제1구역→제2구역 일부 완화	1구역(원지형 보존 → 개별심의), 2구역 신설, 공통사항 조정
보물	946	순천 금둔사지 석조불비상		
보물	1115	보성 봉천리 오층석탑	○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○ 제1구역→제5구역 일부 완화	1구역(원지형 보존 → 개별심의), 2,3,4구역(층수삭제), 공통사항 조정
보물	1293	공주 계룡산 중악단	○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 ○ 제1구역→제5구역 일부 완화	1구역(원지형 보존 → 개별심의), 2,3,4구역(층수삭제), 5구역 신설, 공통사항 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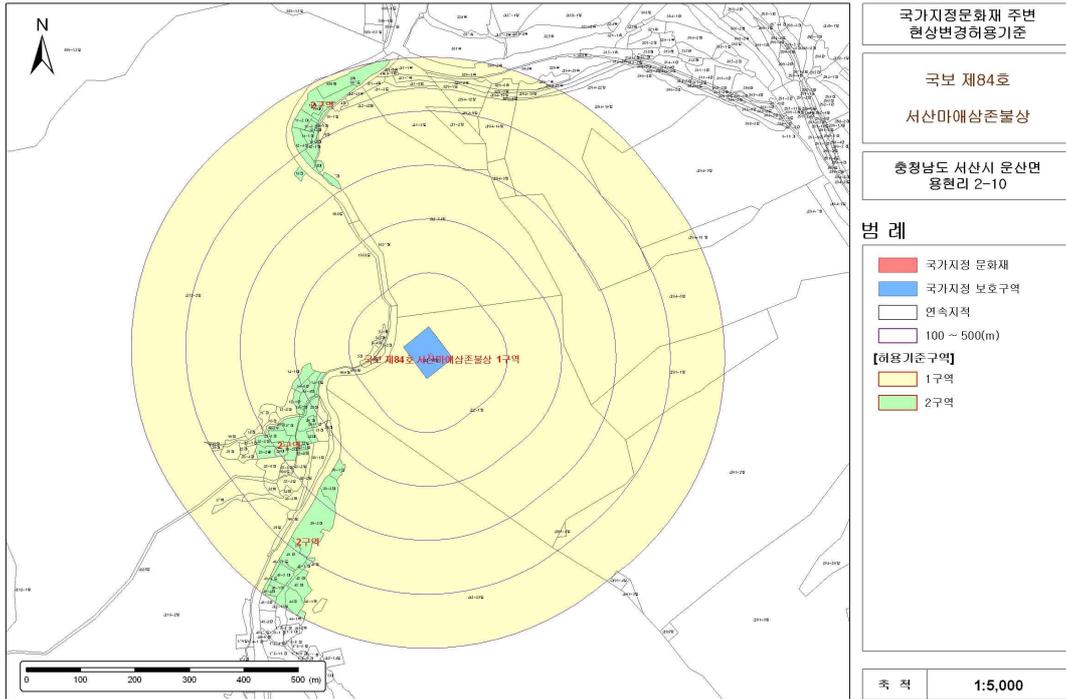
유형	지정 번호	문화재명	허용기준	
			지형도면	범례 표
보물	1372	함평 고막천 석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문화재 지정명칭 수정</li> <li>○ 제1구역→제3구역 일부 완화</li> </ul>	1구역(원지형 보존 → 개별심의), 2구역(층수삭제), 공통사항 조정
보물	1942	화성 용주사 대응보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3구역→제4구역 일부 완화</li> </ul>	공통사항 조정 등

(3) 향후계획 : 허용기준 조정(안)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고시

[붙임] 허용기준 조정 전·후 각 1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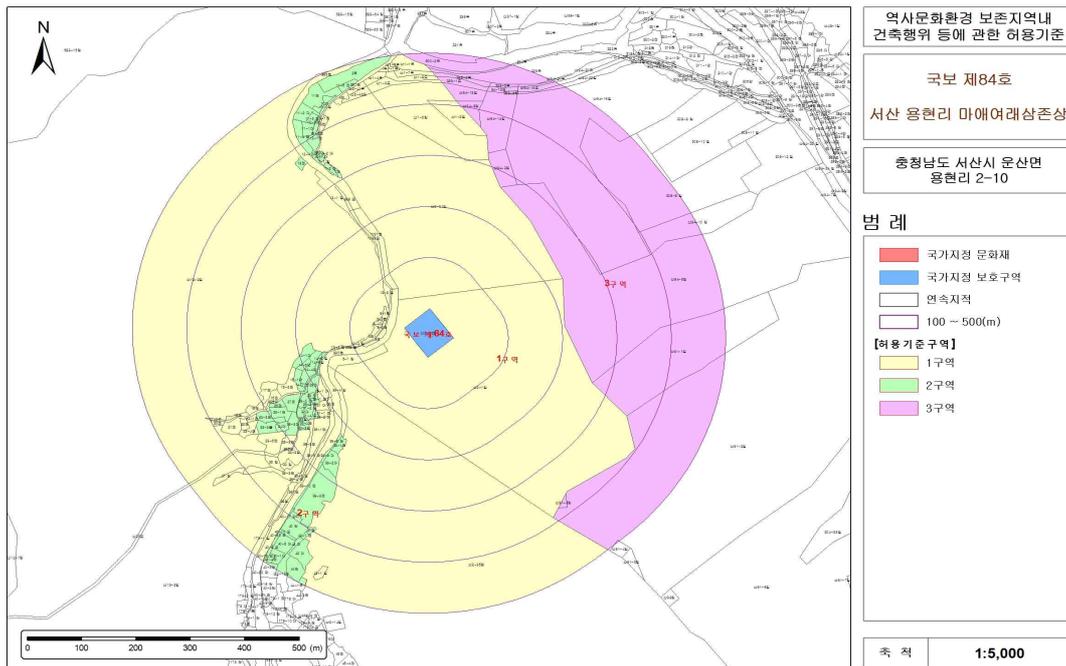
[붙임]

국보 제84호 “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
【 당 초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사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【 변경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사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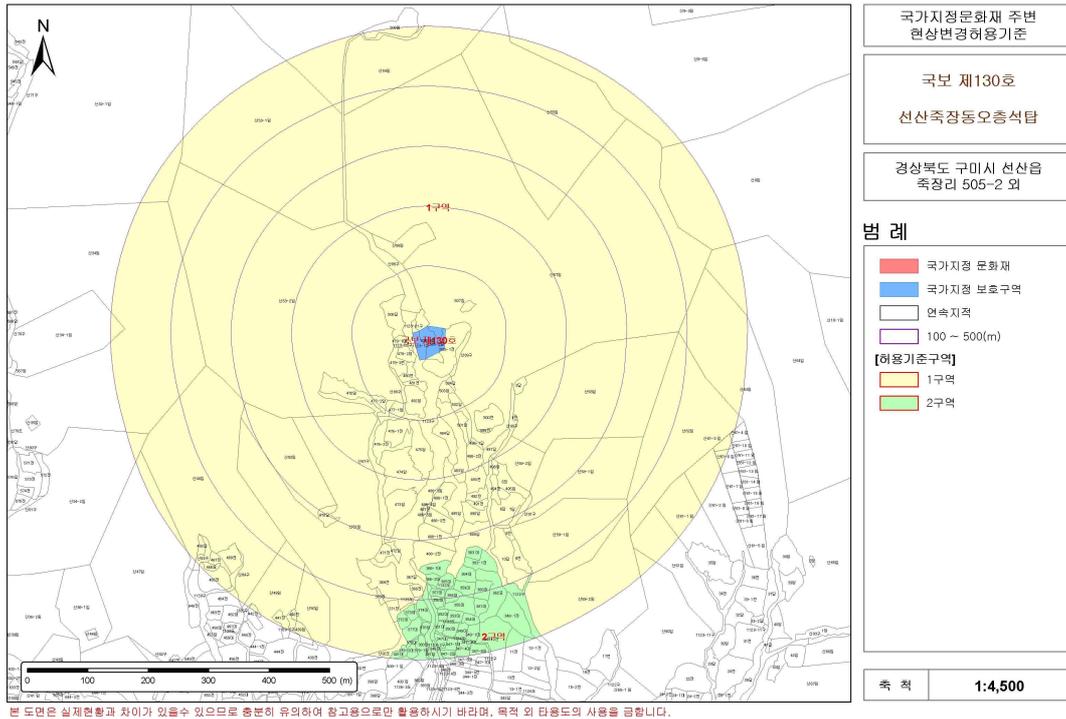
【 범례 표 (당초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원지형 보존		
제2구역	-	○ 최고높이 7.5m(1층) 이하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</li> <li>○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(2층), 경사지붕 12m(2층)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li> <li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 경사지를 성·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li> <li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li> </ul>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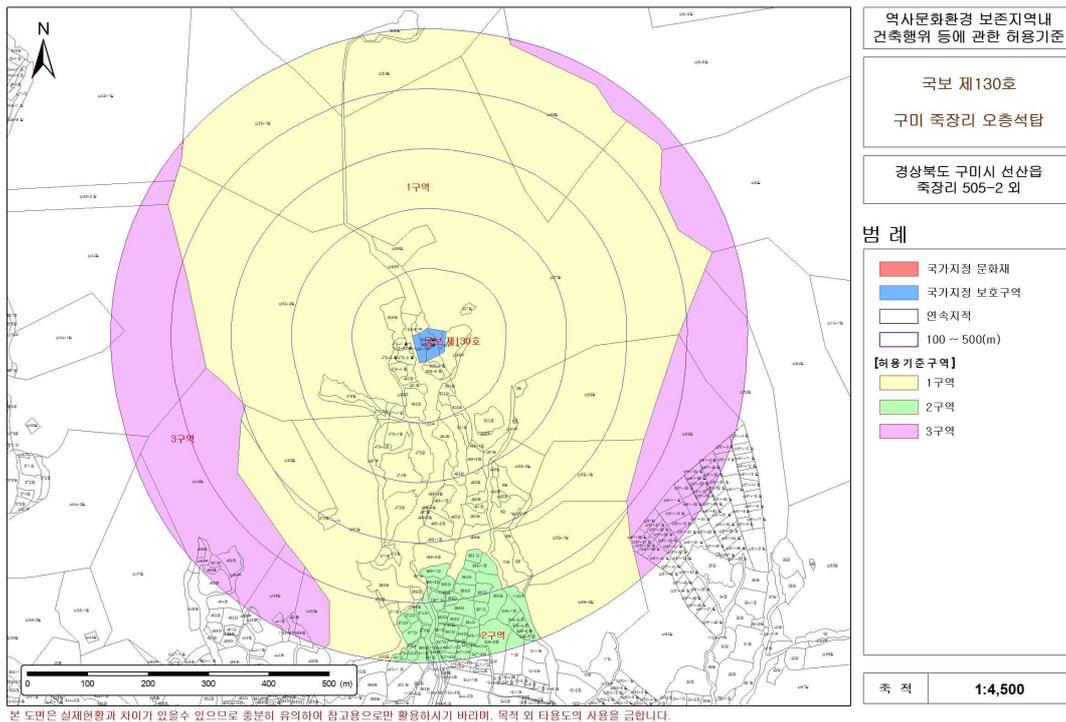
【 범례 표 (변경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-	○ 최고높이 7.5m 이하	
제3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 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</li> <li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li> <li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(고물상, 폐기물 처분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</li> <li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li> <li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li> </ul>		

▣ 국보 제130호 “구미 죽장리 오층석탑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
【 당 초 】



【 변경 】



【 범례 표 (당초)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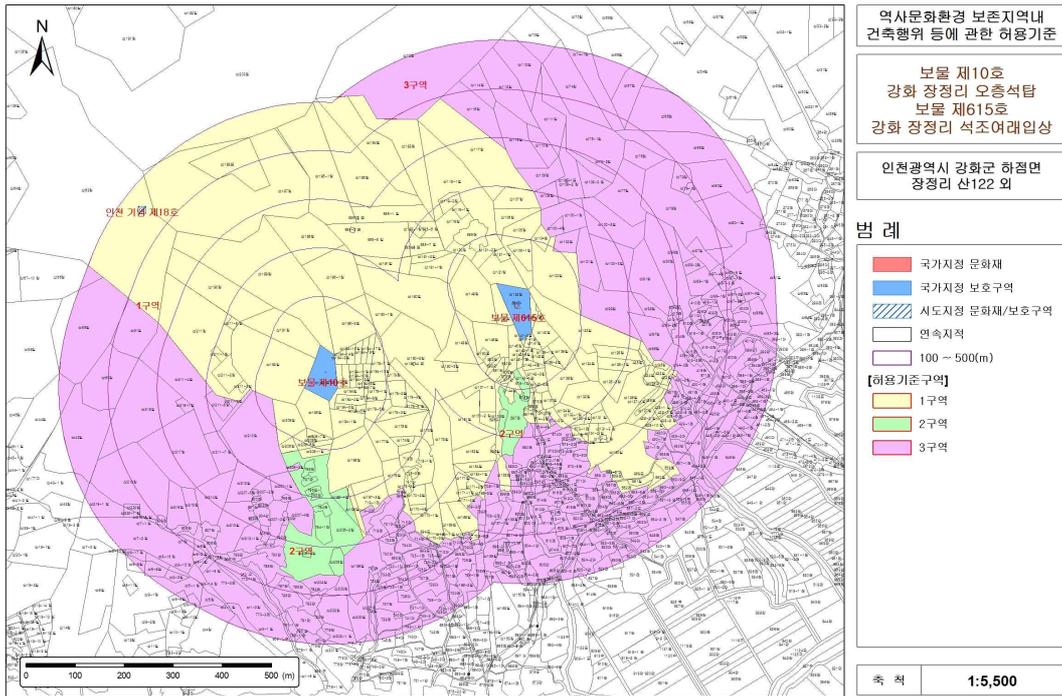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이상)	
제1구역	○원지형 보존		
제2구역	○최고높이 5m(1층) 이하	○최고높이 7.5m(1층) 이하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</li> <li>○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(2층), 경사지붕 12m(2층)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li> <li>○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li> <li>○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경사지를 성·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li> <li>○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li> <li>○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li> </ul>		

【 범례 표 (변경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○ 최고높이 5m 이하	○ 최고높이 7.5m 이하	
제3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<p>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</p> <p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p> <p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p> <p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(고물상, 폐기물 처분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</p> <p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범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p> <p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p> <p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p>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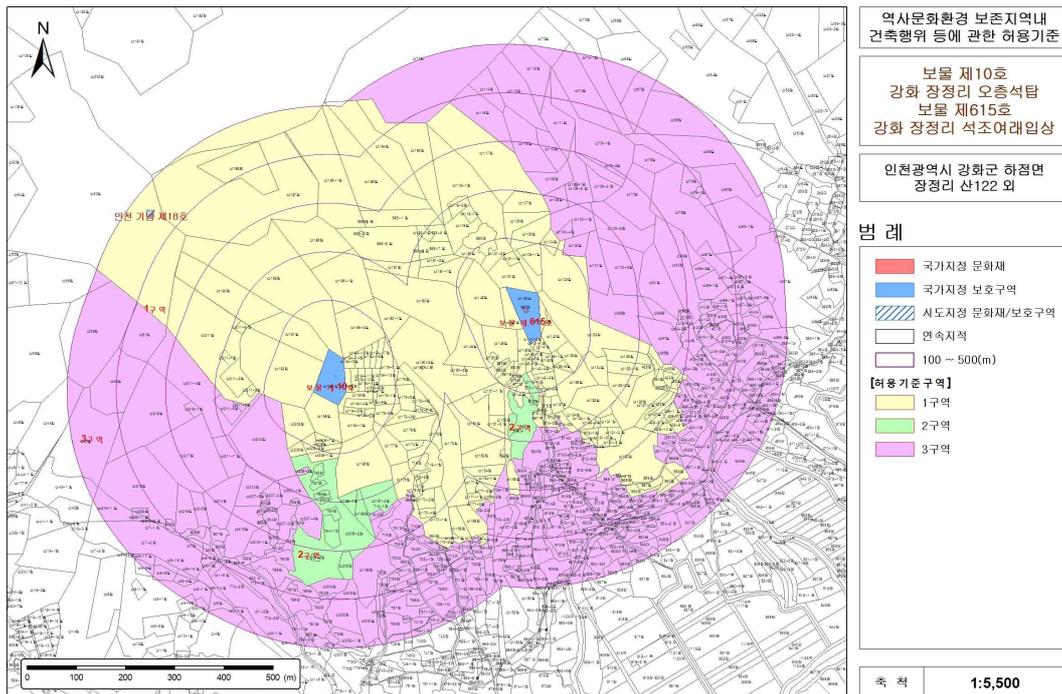
▣ 보물 제10호 “강화 장정리 오층석탑”, 보물 제615호 “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”  
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【 당 초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【 변경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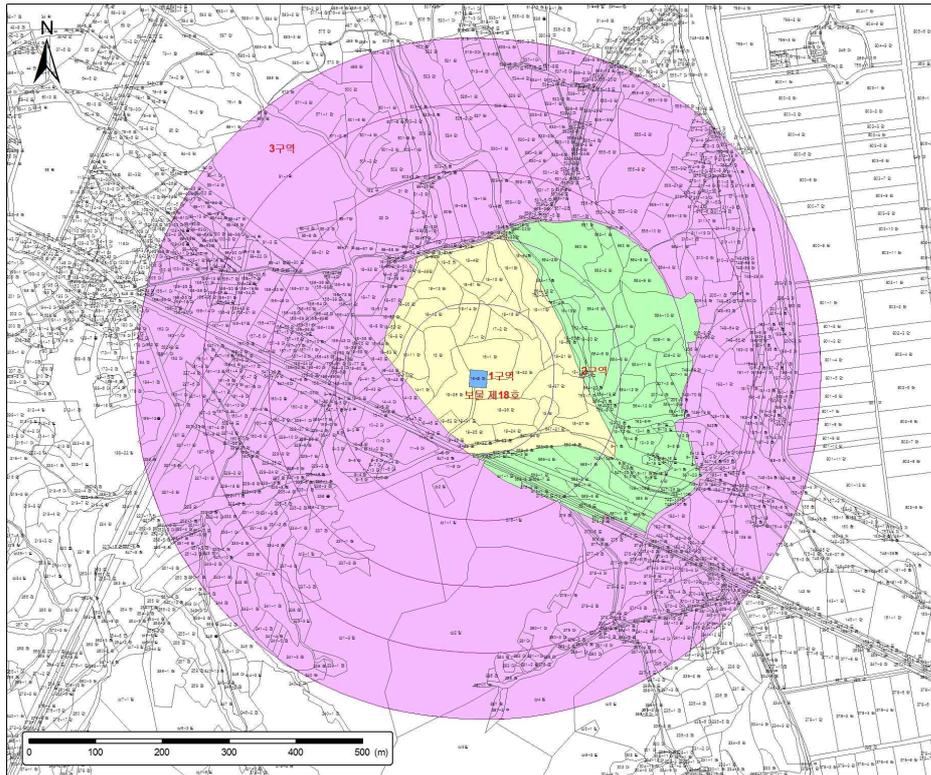
【 범례 표 (당초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○ 최고높이 5m 이하	○ 최고높이 7.5m 이하	
제3구역	○ 최고높이 8m 이하	○ 최고높이 12m 이하	
공통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</li> <li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li> <li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(고물상, 폐기물 처분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</li> <li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li> <li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li> </ul>		

【 범례 표 (변경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○ 최고높이 5m 이하	○ 최고높이 7.5m 이하	
제3구역	○ 최고높이 8m 이하	○ 최고높이 12m 이하	
공통 사항	<p>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</p> <p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p> <p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p> <p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(고물상, 폐기물 처분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</p> <p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p> <p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p> <p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p>		

☐ 보물 제18호 “청양 서정리 구층석탑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
【 당 초 】
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 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보물 제18호  
청양 서정리 구층석탑

충청남도 청양군  
정산면 서정리 16-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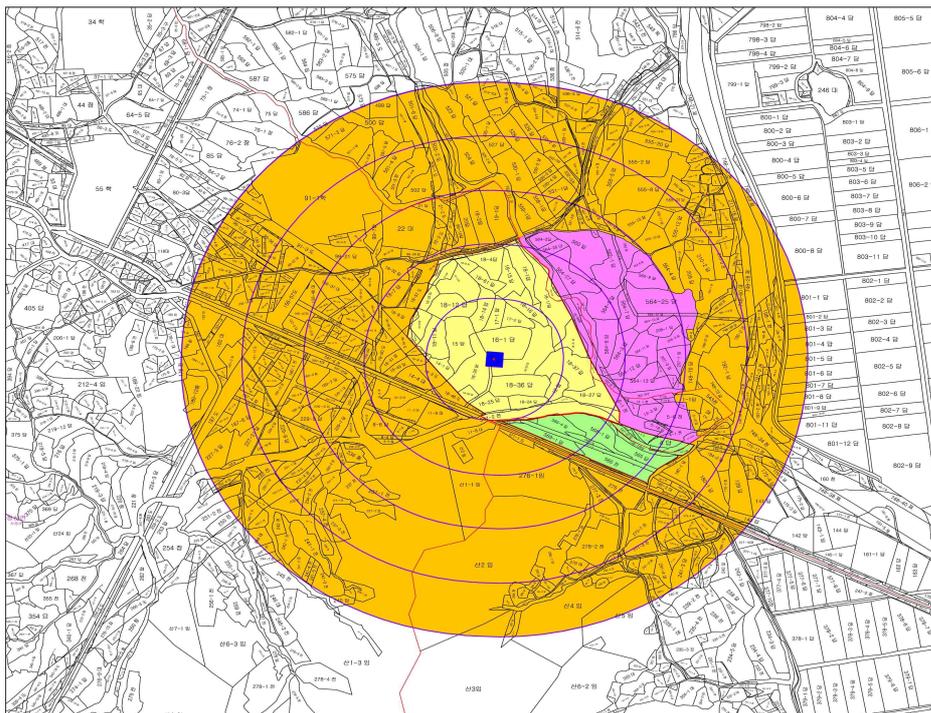
범 례

<span style="color: red;">■</span>	국가지정 문화재
<span style="color: blue;">■</span>	국가지정 보호구역
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">□</span>	연속지적
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">□</span>	100 ~ 500(m)
[허용기준구역]	
<span style="background-color: yellow;">■</span>	1구역
<span style="background-color: lightgreen;">■</span>	2구역
<span style="background-color: purple;">■</span>	3구역

축 척 1:4,500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【 변경 】
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 
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보물 제18호  
청양 서정리 구층석탑

충청남도 청양군  
정산면 서정리 16-2

범 례

<span style="color: red;">■</span>	국가지정 문화재
<span style="color: blue;">■</span>	국가지정 보호구역
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">□</span>	연속지적
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">□</span>	100 ~ 500(m)
[허용기준구역]	
<span style="background-color: yellow;">■</span>	1구역
<span style="background-color: lightgreen;">■</span>	2구역
<span style="background-color: purple;">■</span>	3구역
<span style="background-color: orange;">■</span>	4구역

축 척 1:5,0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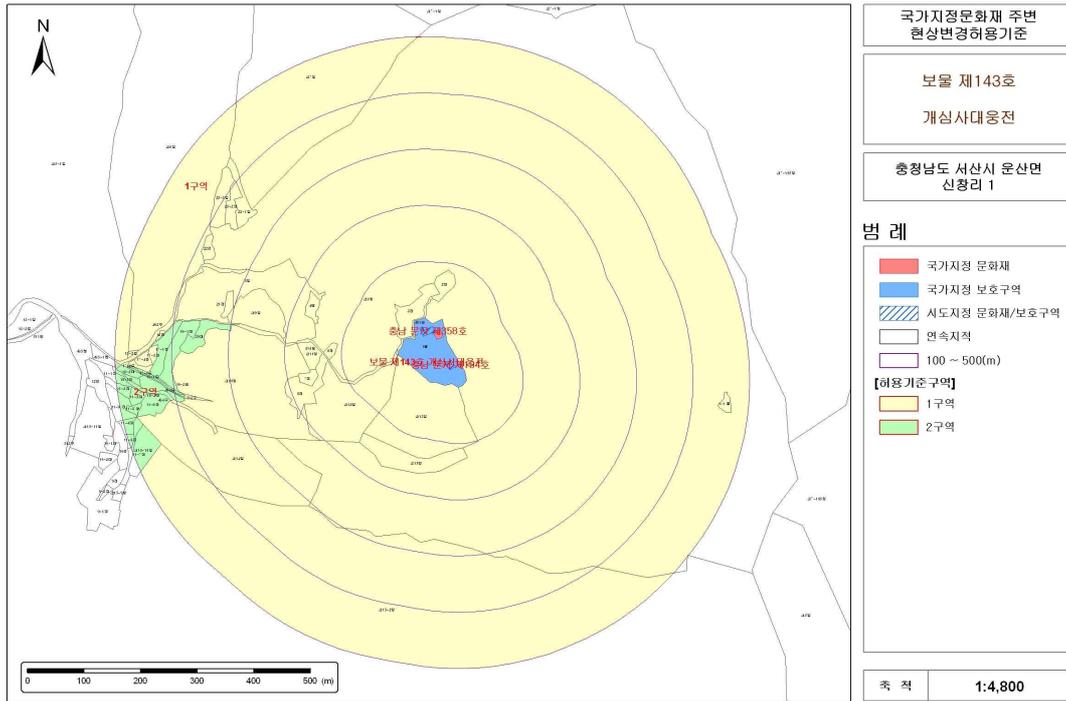
【 범례 표 (당초) 】

구분	허 용 기 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원지형 보존		
제2구역	○ 최고높이 8m(2층) 이하	○ 최고높이 12m(2층) 이하	
제3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 사항	<p>○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</p> <p>○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.</p> <p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(2층), 경사지붕 12m(2층)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p> <p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p> <p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.</p> <p>○ 경사지를 성·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p> <p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p> <p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p>		

【 범례 표 (변경)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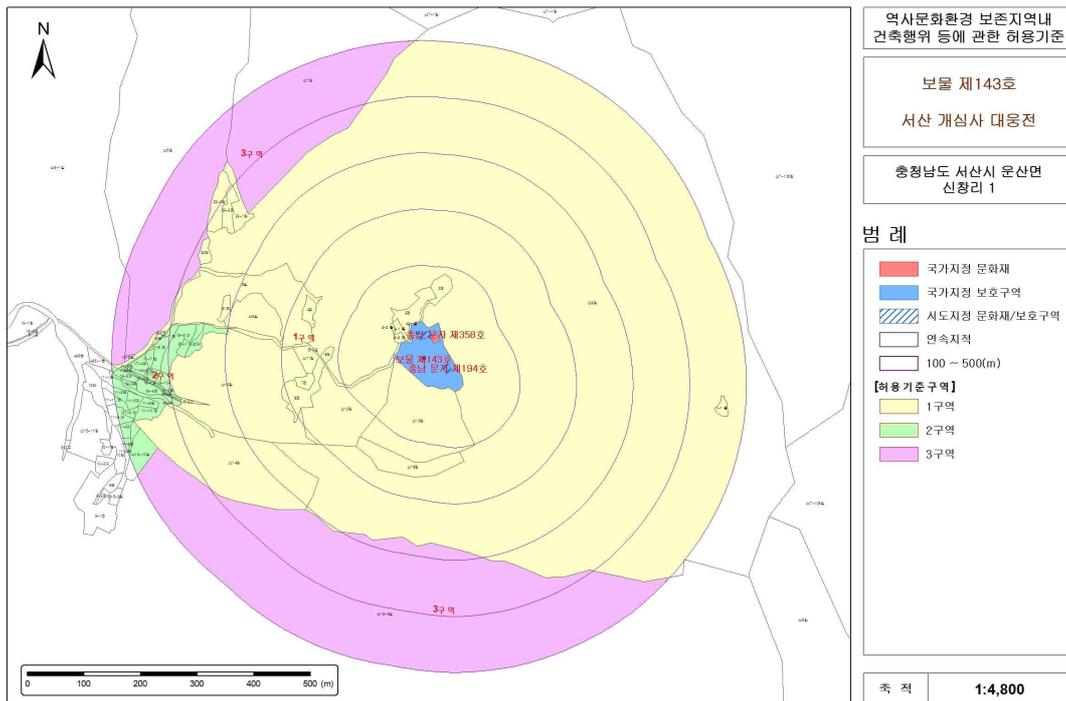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○ 최고높이 8m 이하	○ 최고높이 12m 이하	
제3구역	○ 최고높이 11m 이하	○ 최고높이 15m 이하	
제4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<p>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</p> <p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p> <p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p> <p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(고물상, 폐기물 처분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</p> <p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p> <p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p> <p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p>		

▣ 보물 제143호 “서산 개심사 대웅전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
【 당 초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【 변경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【 범례 표 (당초)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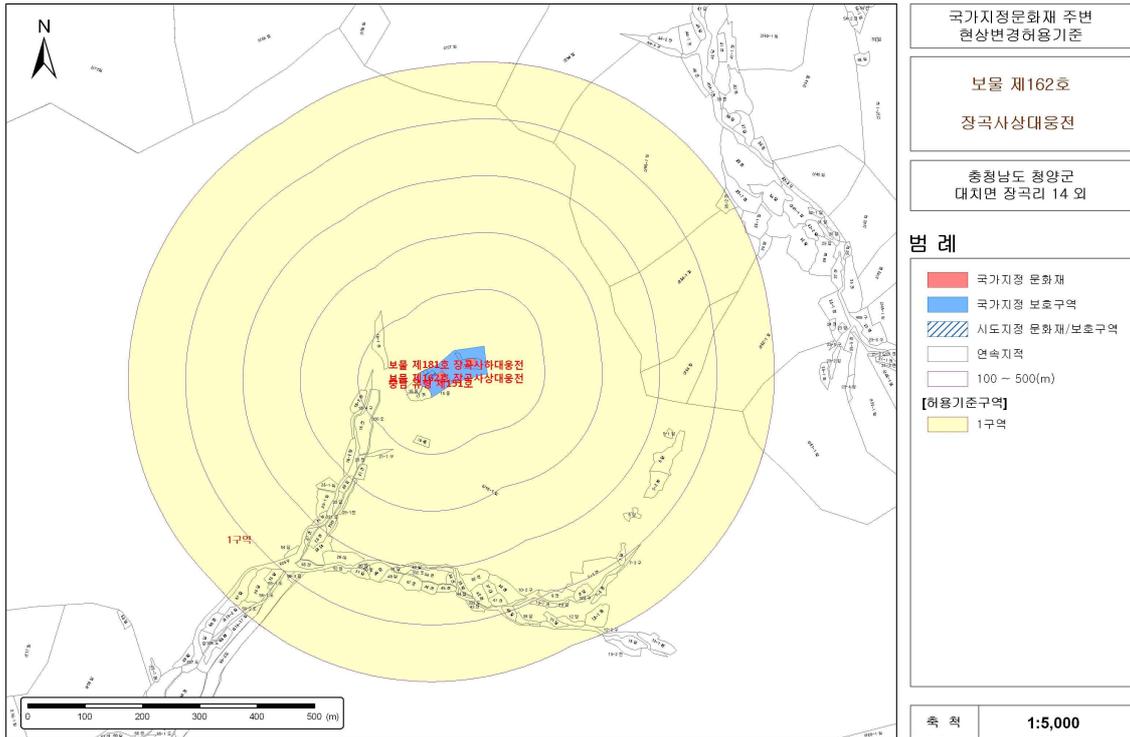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원지형 보존		
제2구역	-	○ 최고높이 7.5m(1층) 이하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</li> <li>○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(2층), 경사지붕 12m(2층)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li> <li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 경사지를 성·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li> <li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li> </ul>		

【 범례 표 (변경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-	○ 최고높이 7.5m 이하	
제3구역	<p>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</p> <p>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</p>		
공통사항	<p>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</p> <p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p> <p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p> <p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(고물상, 폐기물 처분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</p> <p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p> <p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p> <p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p>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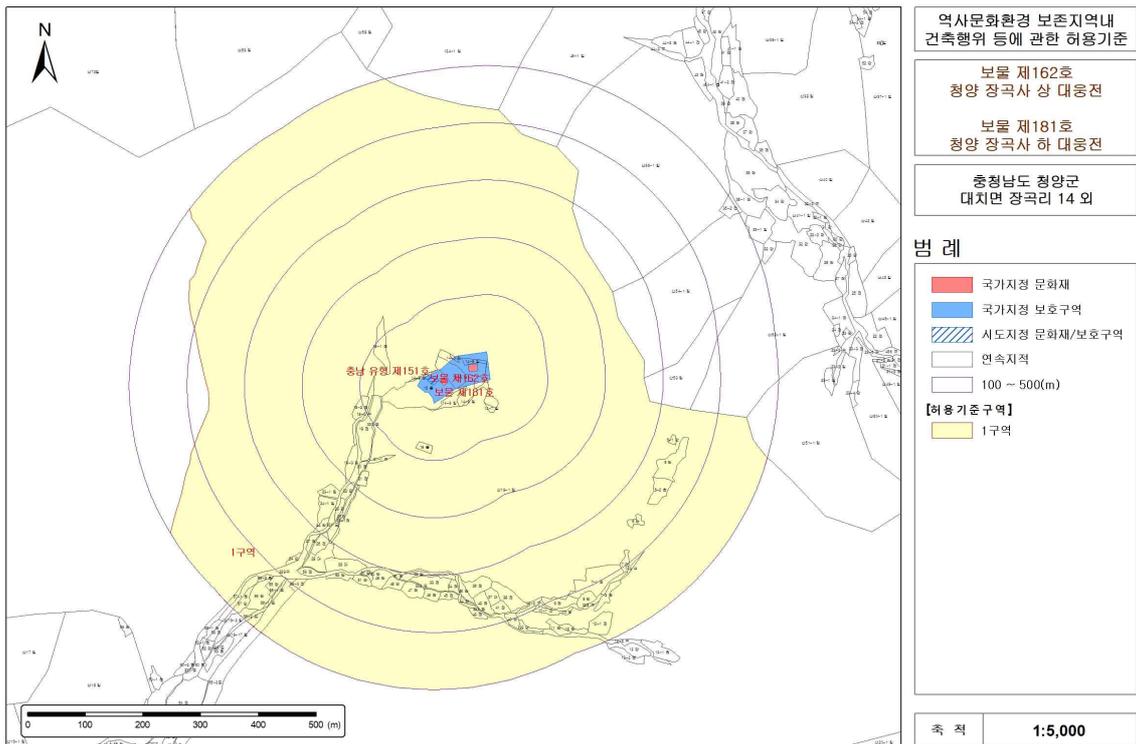
▣ 보물 제162호 “청양 장곡사 상 대웅전”, 보물 제181호 “청양 장곡사 하 대웅전”  
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【 당 초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【 변경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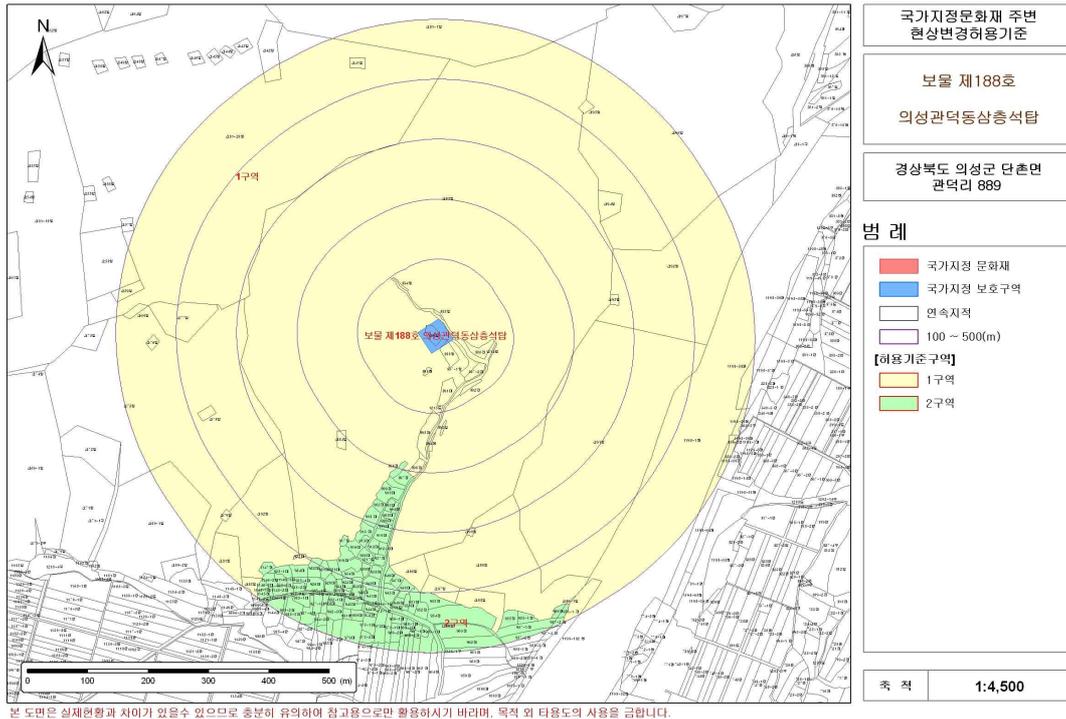
【 범례 표 (당초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원지형 보존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</li> <li>○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(2층), 경사지붕 12m(2층)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li> <li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 경사지를 성·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li> <li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li> </ul>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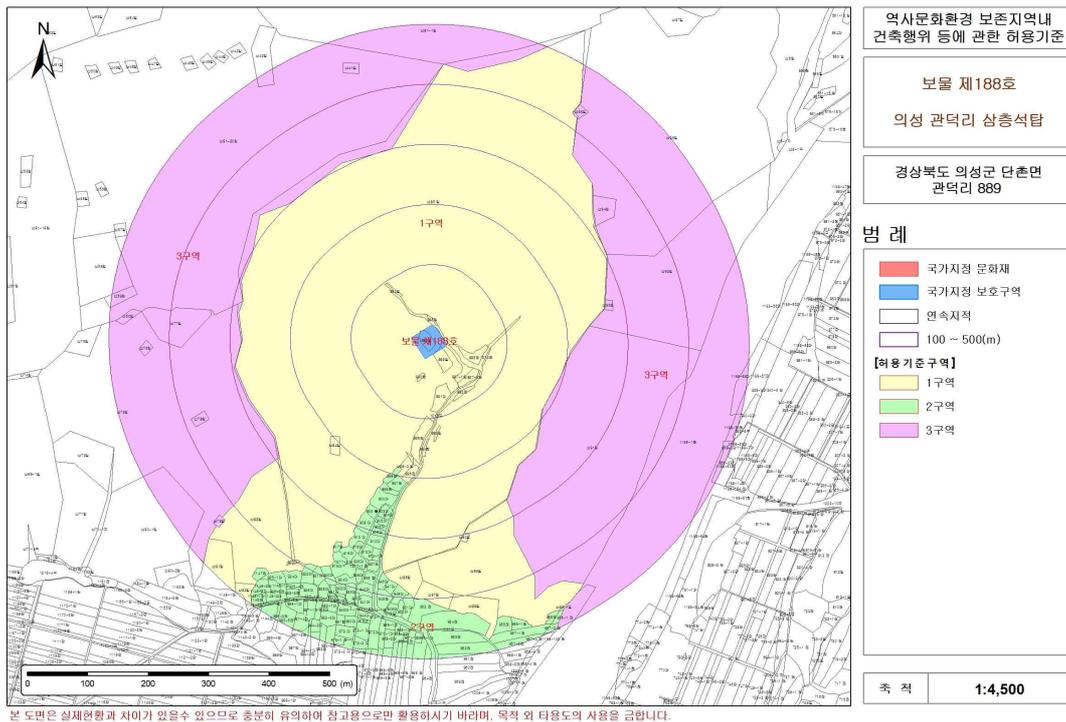
【 범례 표 (변경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</li> <li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li> <li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(고물상, 폐기물 처분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</li> <li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li> <li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li> </ul>		

▣ 보물 제188호 “의성 관덕리 삼층석탑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
【 당 초 】



【 변경 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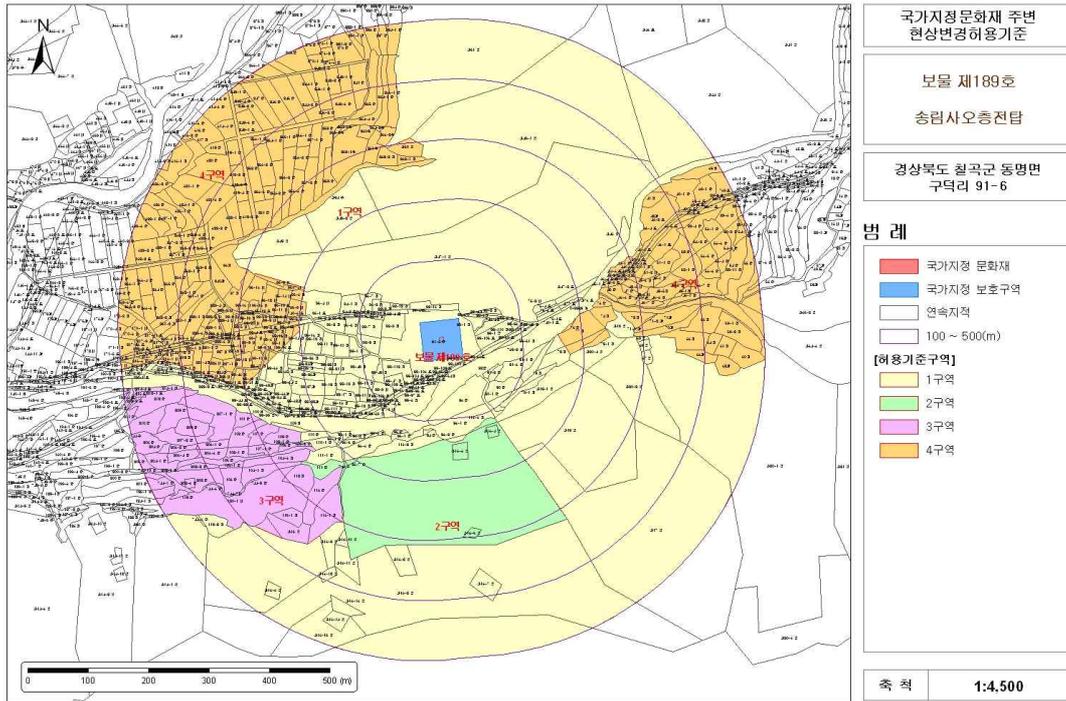
【 범례 표 (당초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원지형 보존		
제2구역	○최고높이 8m(2층) 이하	○최고높이 12m(2층) 이하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</li> <li>○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(2층), 경사지붕 12m(2층)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li> <li>○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li> <li>○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경사지를 성·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li> <li>○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li> <li>○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li> </ul>		

【 범례 표 (변경)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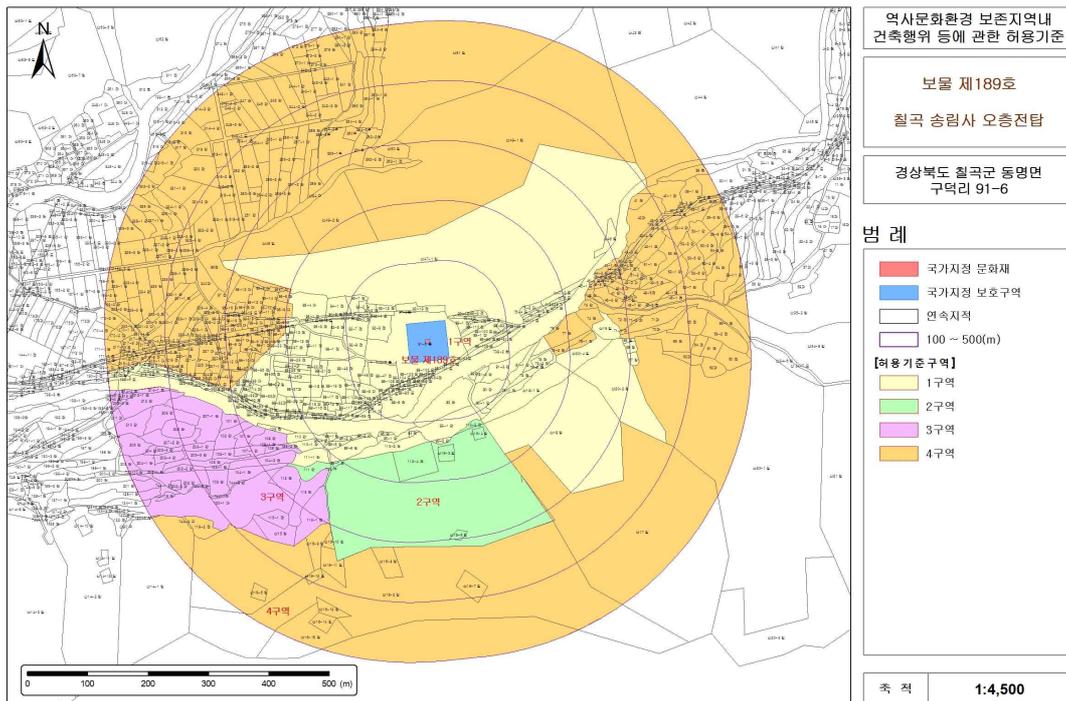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○ 최고높이 8m 이하	○ 최고높이 12m 이하	
제3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<p>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</p> <p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p> <p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p> <p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(고물상, 폐기물 처분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</p> <p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p> <p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p> <p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p>		

▣ 보물 제189호 “칠곡 송림사 오층전탑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
【 당 초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【 변경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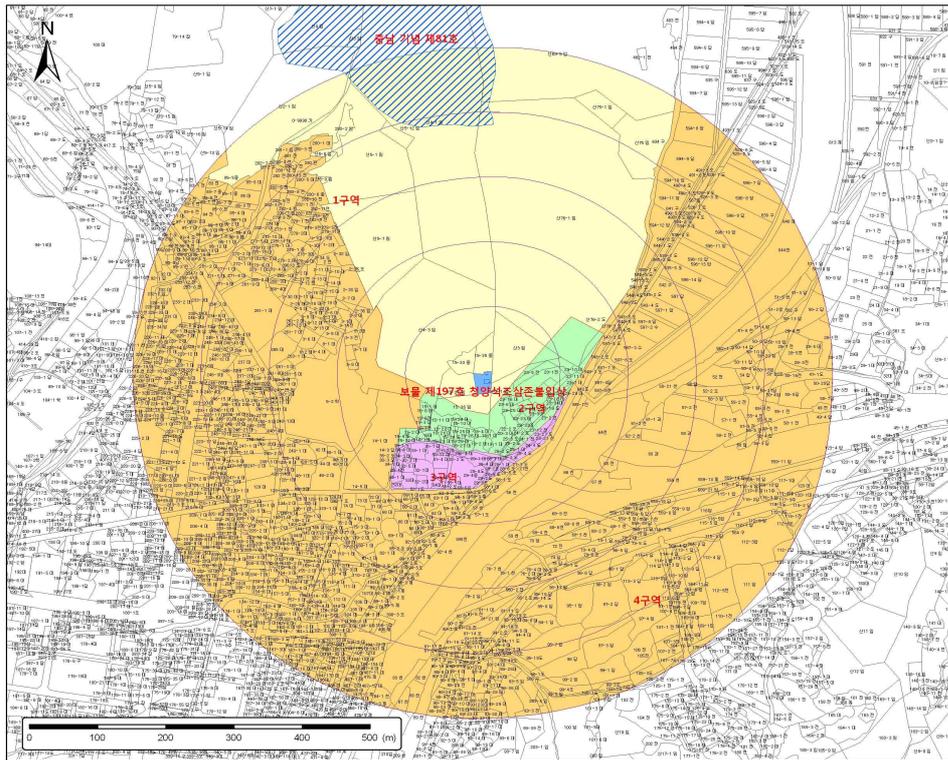
【 범례 표 (당초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원지형 보존		
제2구역	-	○ 최고높이 7.5m(1층) 이하	
제3구역	-	○ 최고높이 12m(2층) 이하	
제4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<p>○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</p> <p>○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.</p> <p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(2층), 경사지붕 12m(2층)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p> <p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p> <p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.</p> <p>○ 경사지를 성·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p> <p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p> <p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p>		

【 범례 표 (변경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-	○ 최고높이 7.5m 이하	
제3구역	-	○ 최고높이 12m 이하	
제4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<p>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</p> <p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p> <p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p> <p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(고물상, 폐기물 처분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</p> <p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p> <p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p> <p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p>		

▣ 보물 제197호 “청양 읍내리 석조여래삼존입상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
【 당 초 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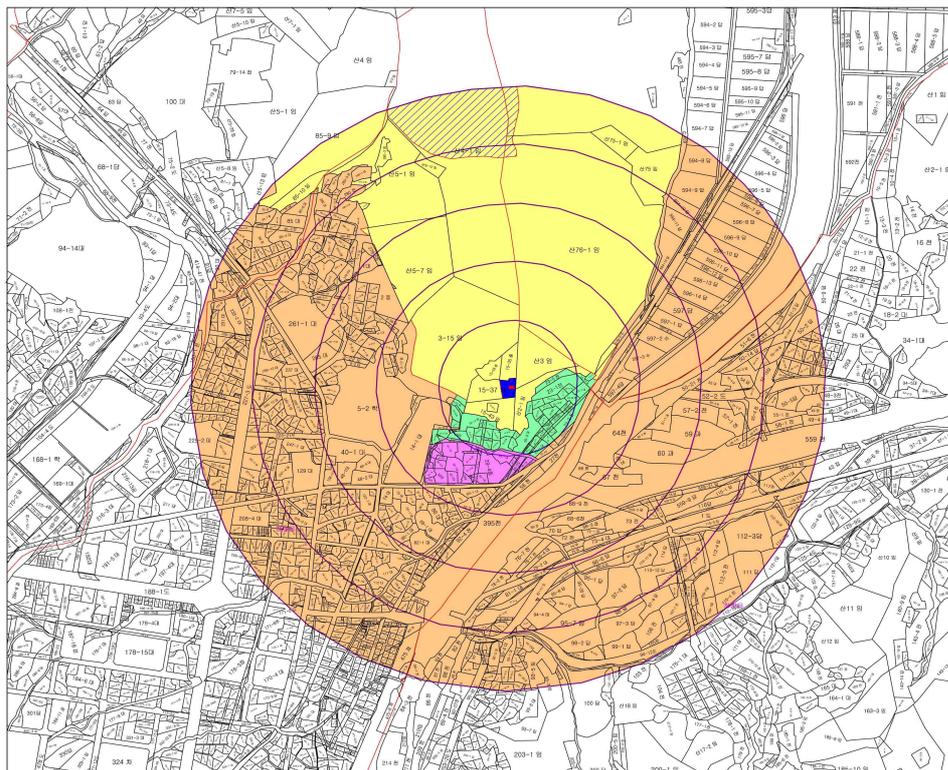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법적 외 타도면의 사용을 금합니다.

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
보물 제197호 청양 읍내리 석조여래삼존입상
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5-37

<b>범 례</b>	
	국가지정 문화재
	국가지정 보호구역
	시도지정 문화재/보호구역
	연속지적
	100 ~ 500(m)
<b>[허용기준구역]</b>	
	1구역
	2구역
	3구역
	4구역

축 적	1:4,500
-----	---------

【 변경 】

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보물 제197호 청양 읍내리 석조여래삼존입상
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5-37

<b>범 례</b>	
	국가지정 문화재
	국가지정 보호구역
	시도지정 문화재/보호구역
	연속지적
	100 ~ 500(m)
<b>[허용기준구역]</b>	
	1구역
	2구역
	3구역
	4구역

축 적	1:5,000
-----	---------

【 범례 표 (당초)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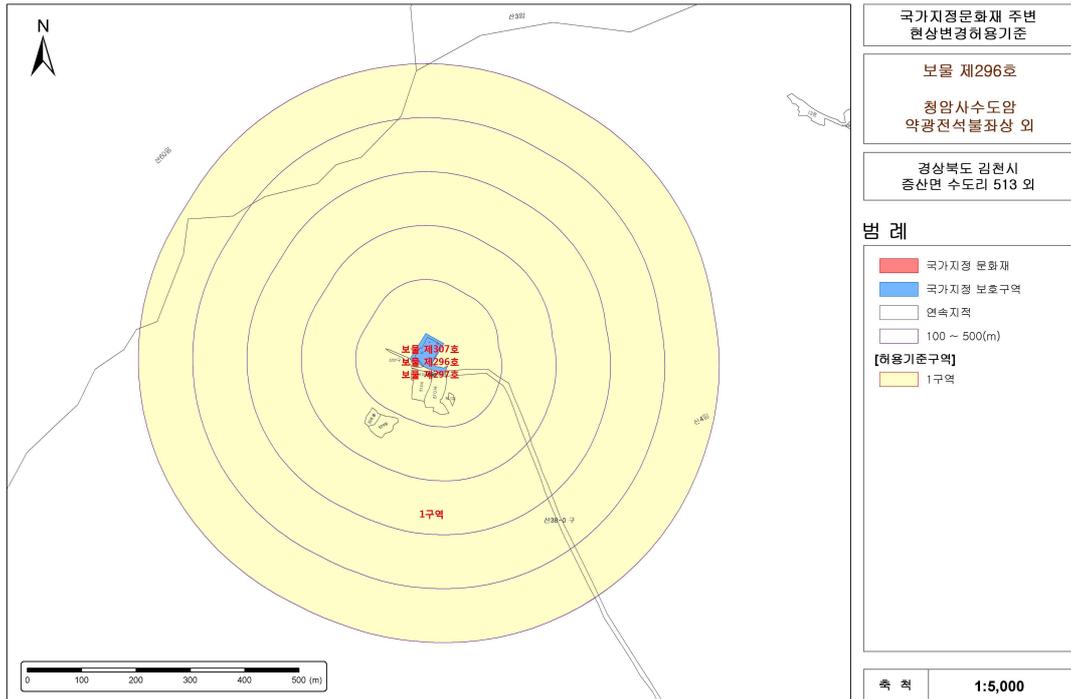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신축불가, 기존건축물 개·보수, 재축 허용		
제2구역	○ 최고높이 11m(3층) 이하	○ 최고높이 15m(3층) 이하	
제3구역	○ 최고높이 18m(5층) 이하	○ 최고높이 21m(5층) 이하	
제4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</li> <li>○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(2층), 경사지붕 12m(2층)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li> <li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 경사지를 성·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li> <li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li> </ul>		

【 범례 표 (변경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○ 최고높이 11m 이하	○ 최고높이 15m 이하	
제3구역	○ 최고높이 18m 이하	○ 최고높이 21m 이하	
제4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<p>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</p> <p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p> <p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p> <p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(고물상, 폐기물 처분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</p> <p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p> <p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p> <p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p>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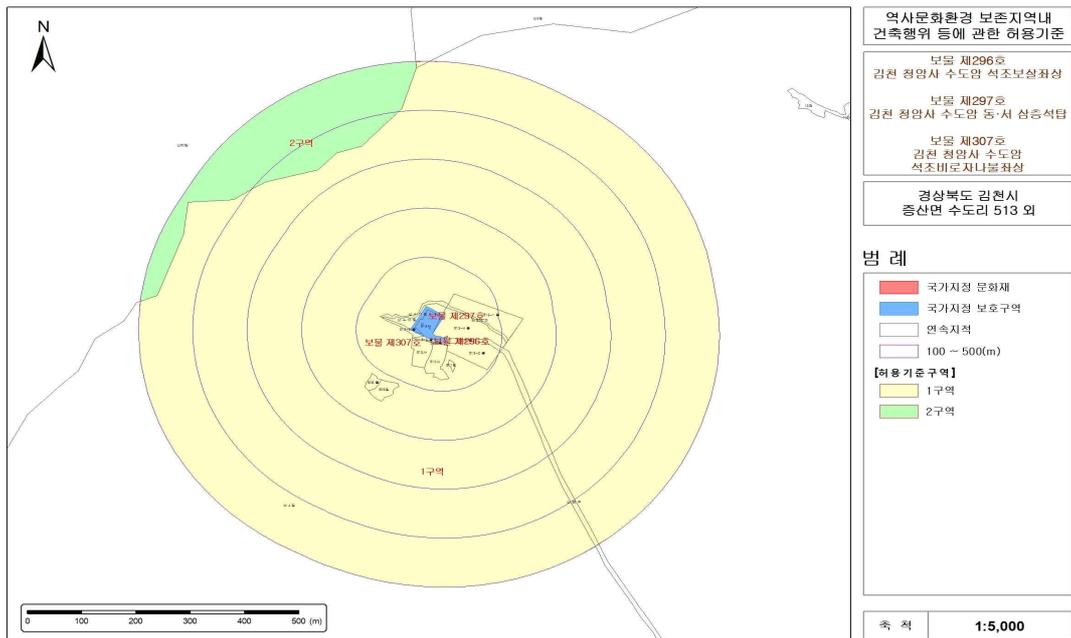
▣ 보물 제296호 “김천 청암사 수도암 석조보살좌상”, 보물 제297호 “김천 청암사 수도암 동·서 삼층석탑”, 보물 제307호 “김천 청암사 수도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【 당 초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【 변경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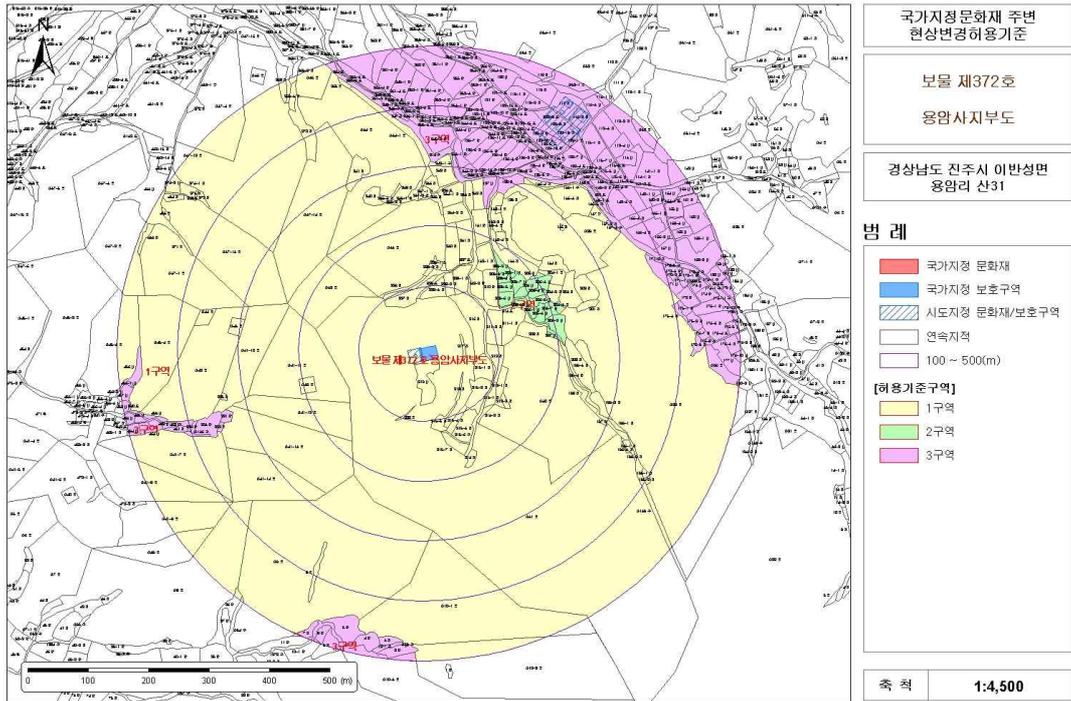
【 범례 표 (당초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원지형 보존		
공통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</li> <li>○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(2층), 경사지붕 12m(2층)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li> <li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 경사지를 성·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li> <li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li> </ul>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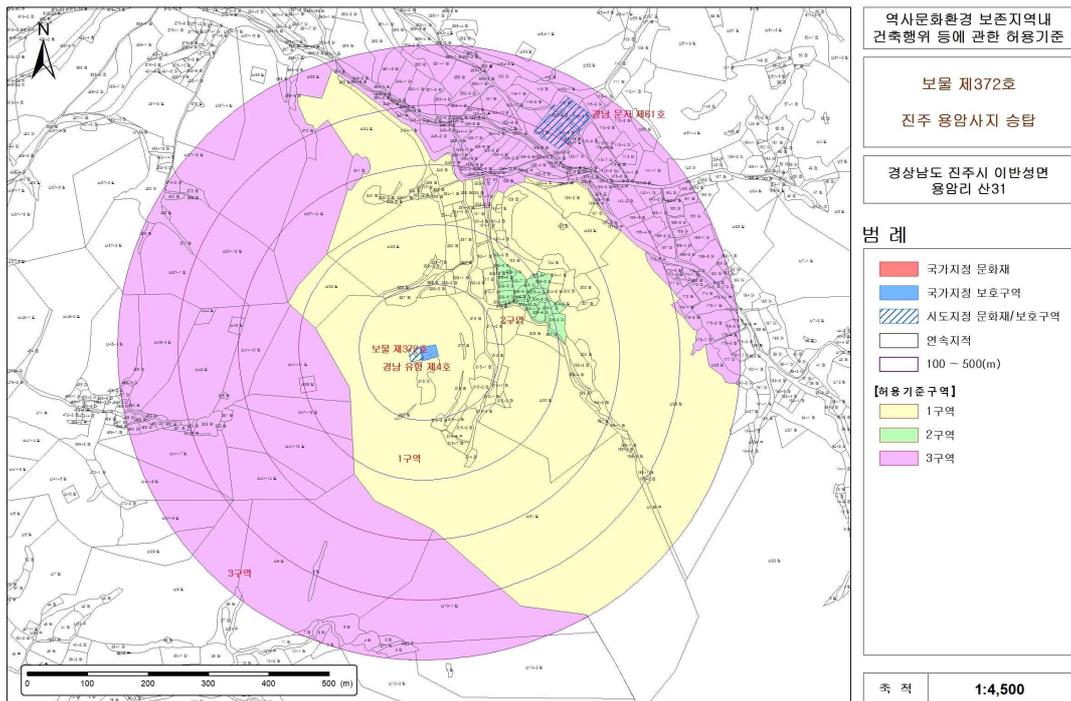
【 범례 표 (변경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 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 사항	<p>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</p> <p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p> <p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p> <p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리시설(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.</p> <p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p> <p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p> <p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p>		

## ▣ 보물 제372호 “진주 용암사지 승탑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【 당 초 】



## 【 변경 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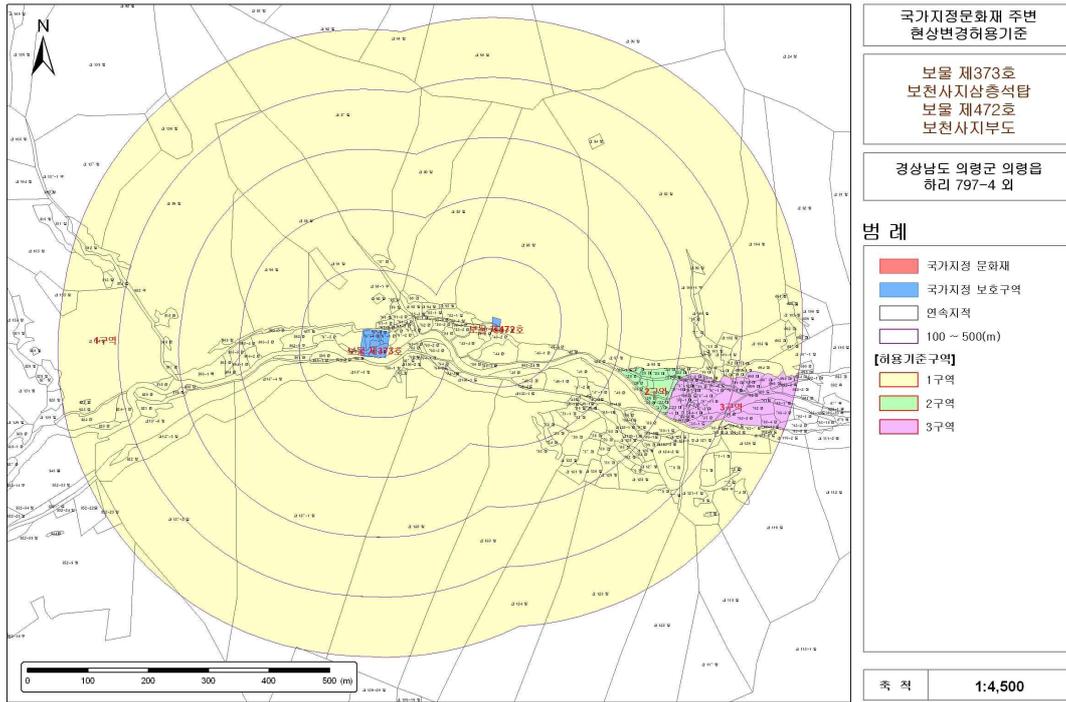
【 범례 표 (당초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원지형 보존		
제2구역	○ 최고높이 5m(1층) 이하	○ 최고높이 7.5m(1층) 이하	
제3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<p>○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</p> <p>○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.</p> <p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(2층), 경사지붕 12m(2층)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p> <p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p> <p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.</p> <p>○ 경사지를 성·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p> <p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p> <p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p>		

【 범례 표 (변경)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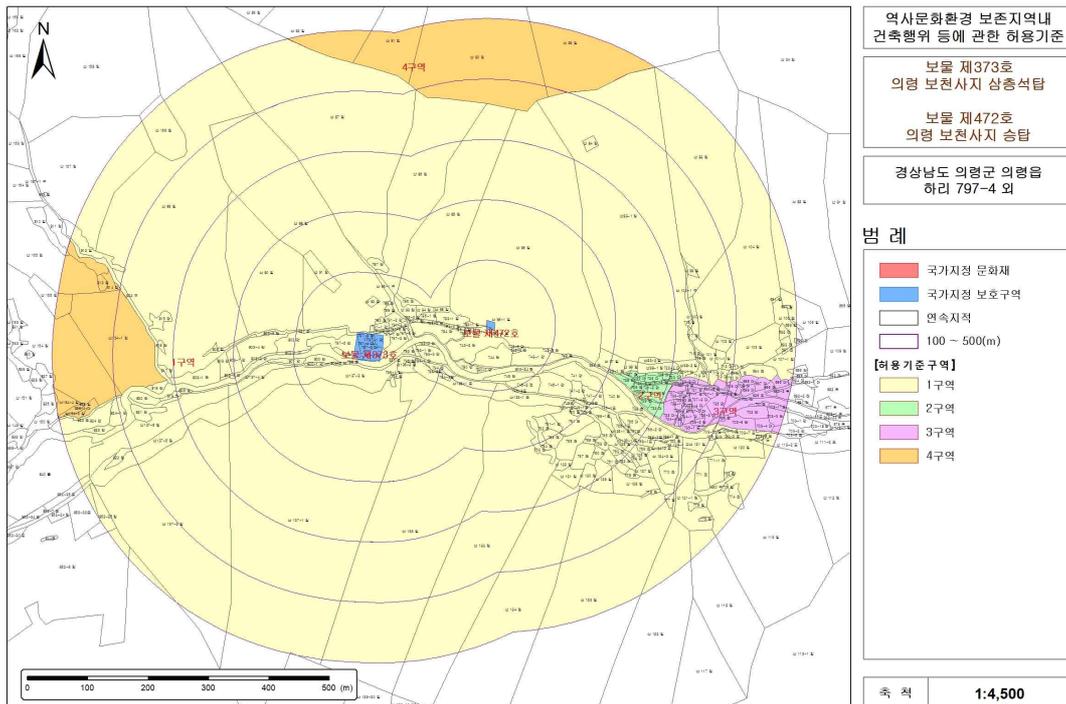
구 분	허 용 기 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○ 최고높이 5m 이하	○ 최고높이 7.5m 이하	
제3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 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<p>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</p> <p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p> <p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p> <p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(고물상, 폐기물 처분 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</p> <p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범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p> <p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p> <p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p>		

▣ 보물 제373호 “의령 보천사지 삼층석탑”, 보물 제472호 “의령 보천사지 승탑”  
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
【 당 초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【 변경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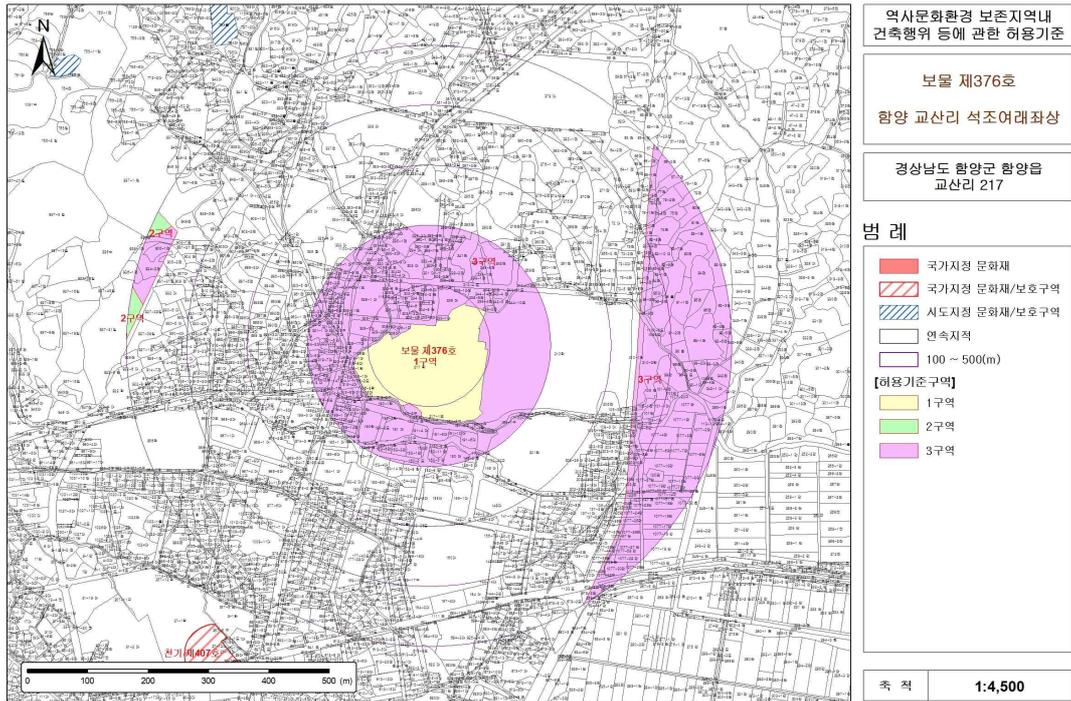
【 범례 표(당초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원지형 보존		
제2구역	○ 최고높이 5m(1층) 이하	○ 최고높이 7.5m(1층) 이하	-
제3구역	○ 최고높이 8m(2층) 이하	○ 최고높이 12m(2층) 이하	-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</li> <li>○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(2층), 경사지붕 12m(2층)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li> <li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 경사지를 성·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li> <li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li> </ul>		

【 범례 표(변경)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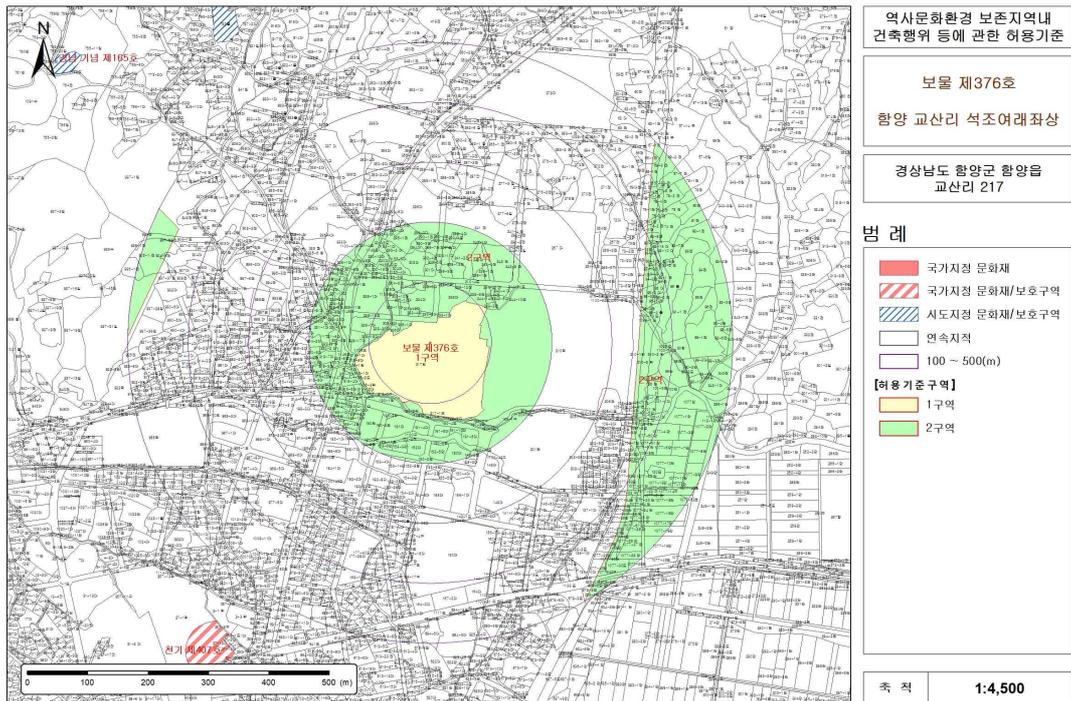
구 분	허 용 기 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○ 최고높이 5m 이하	○ 최고높이 7.5m 이하	
제3구역	○ 최고높이 8m 이하	○ 최고높이 12m 이하	
제4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 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</li> <li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li> <li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(고물상, 폐기물 처분 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</li> <li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li> <li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li> </ul>		

# ▣ 보물 제376호 “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【 당 초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# 【 변경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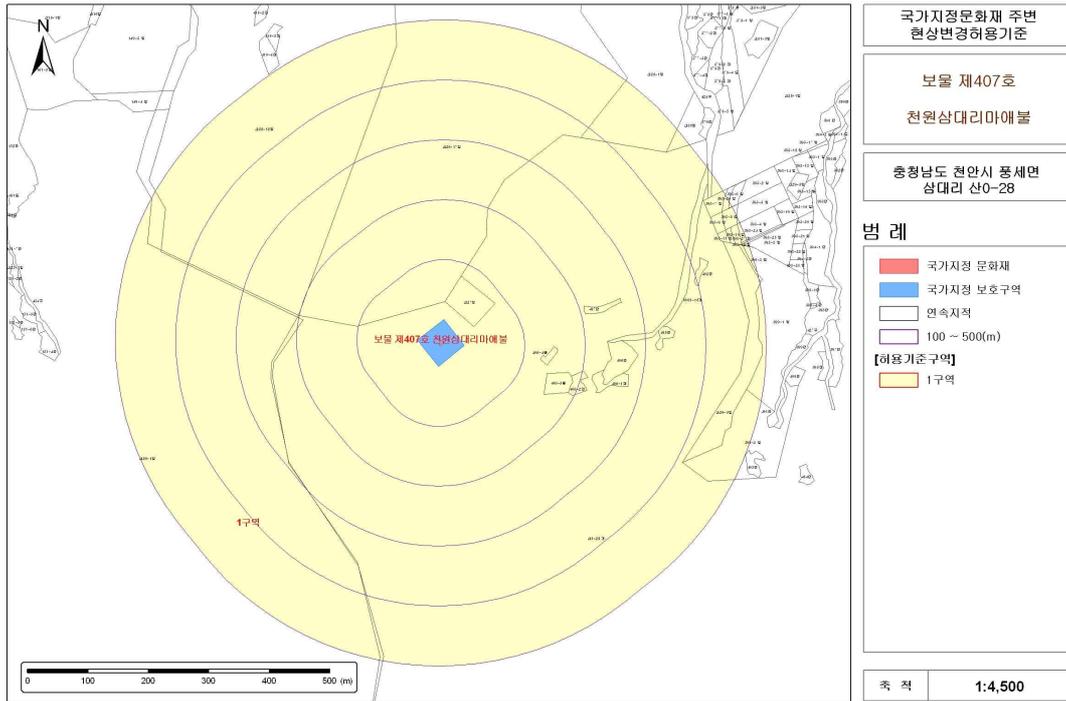
**【 범례 표(당초) 】**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양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제3구역	○ 국가지정문화재(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 상림, 제407호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) 및 시도지정문화재(유형문화재 제225호 함양 향교, 기념물 제 165호 세종왕자한냥군묘역) 허용기준을 따름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</li> <li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li> <li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,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(고물상, 폐기물 처리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</li> <li>○ 높이 3m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li> <li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li> </ul>		

【 범례 표(변경)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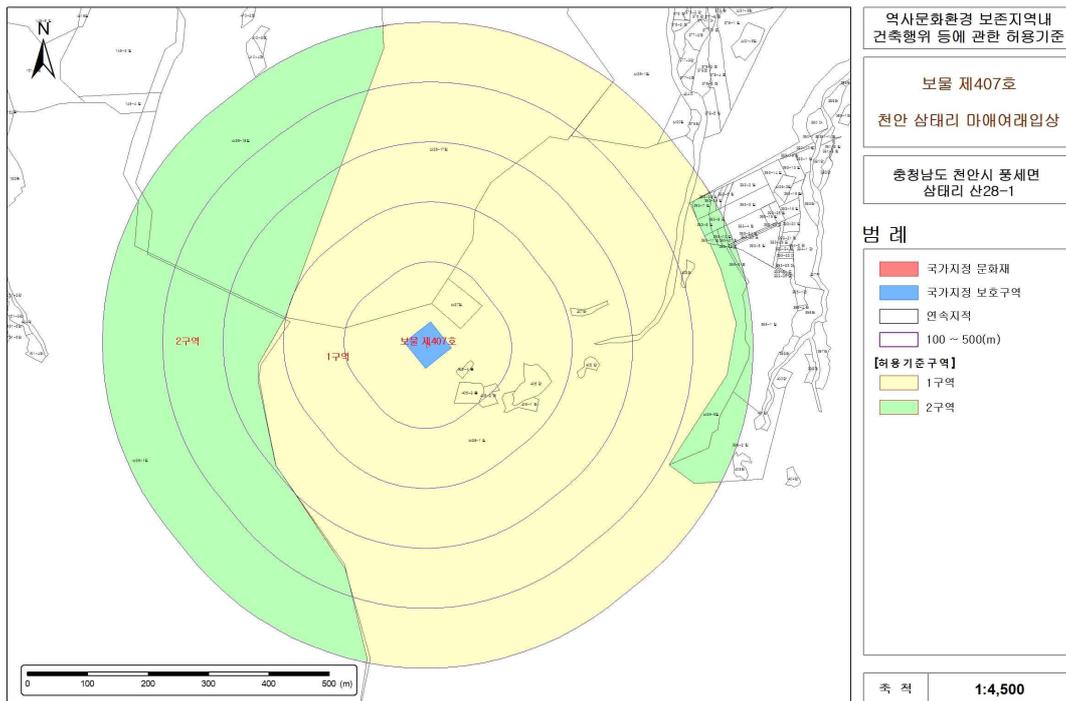
구 분	허 용 기 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 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</li> <li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li> <li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(고물상, 폐기물 처분 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</li> <li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li> <li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li> </ul>		

▣ 보물 제407호 “천안 삼태리 마애여래입상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
【 당 초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【 변경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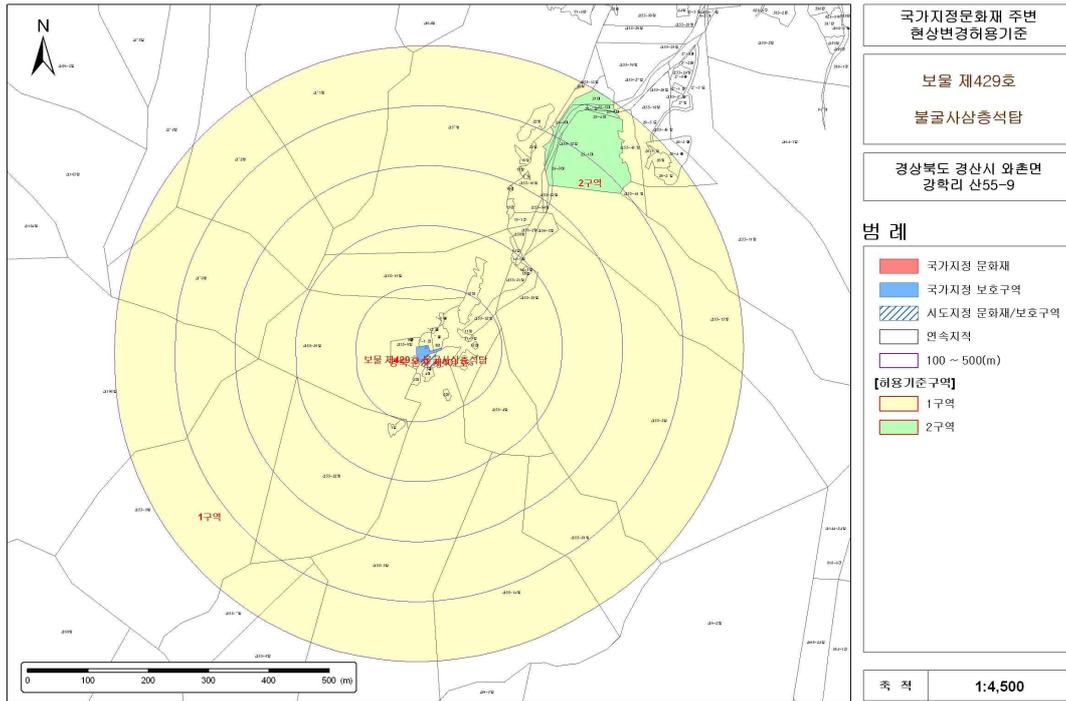
【 범례 표 (당초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원지형 보존		
공통사항	○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 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		

【 범례 표 (변경)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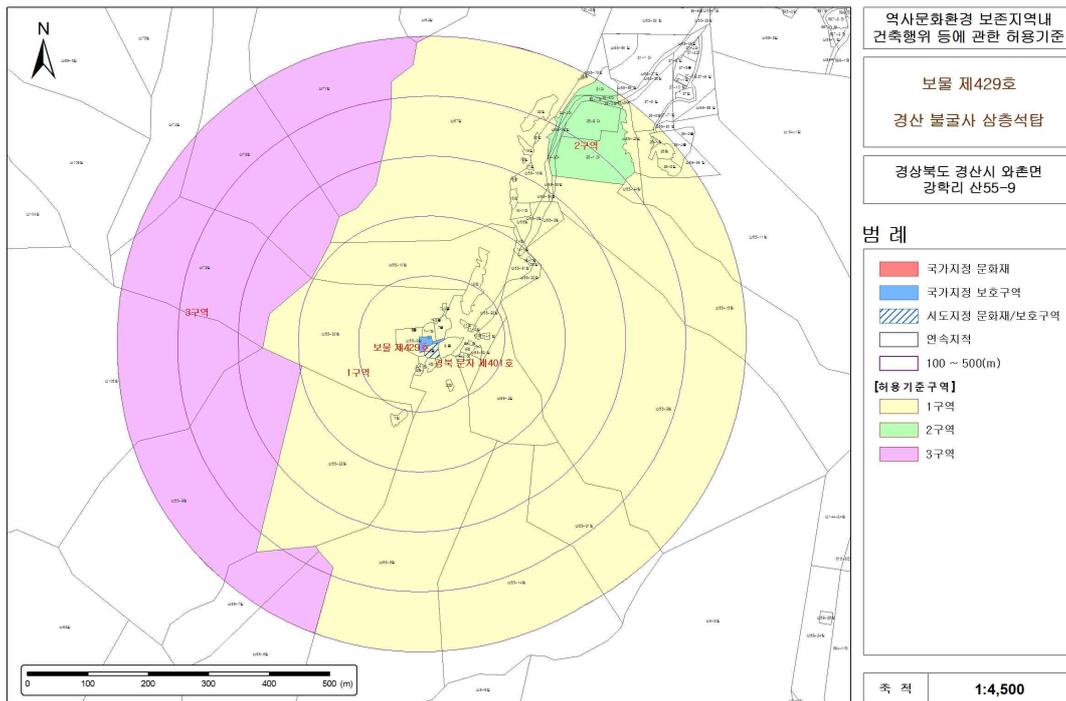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 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<p>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</p> <p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p> <p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흰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p> <p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(고물상, 폐기물 처분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</p> <p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벽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p> <p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p> <p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p>		

▣ 보물 제429호 “경산 불굴사 삼층석탑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
【 당 초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【 변경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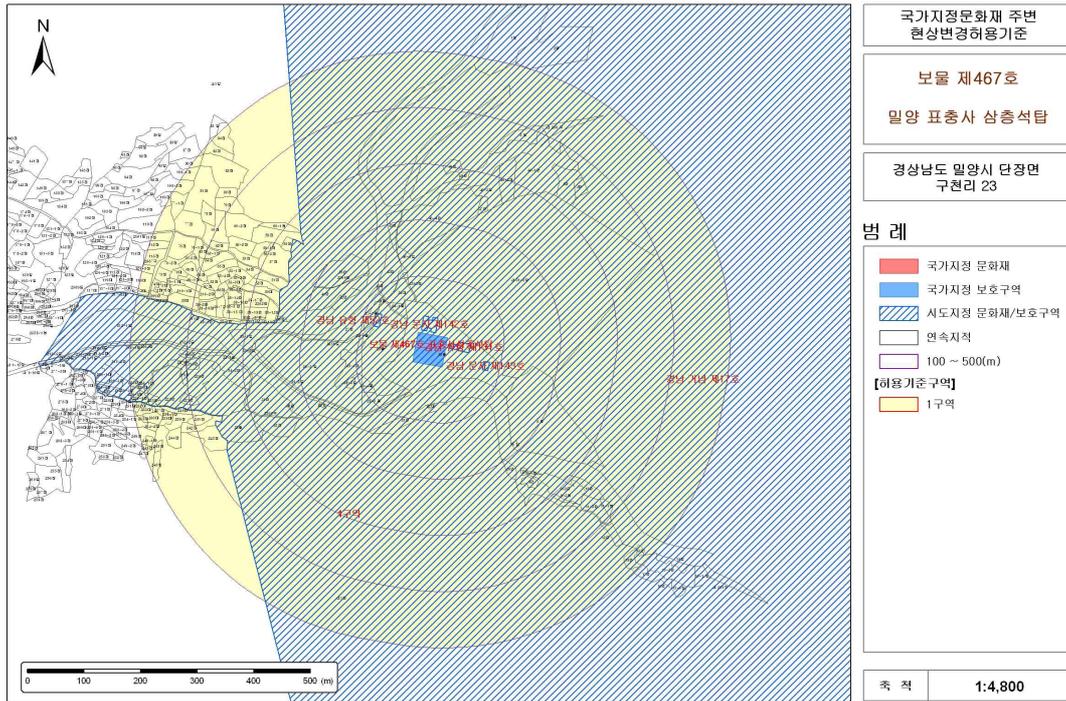
【 범례 표 (당초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원지형 보존		
제2구역	○최고높이 14m(4층) 이하	○최고높이 18m(4층) 이하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</li> <li>○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(2층), 경사지붕 12m(2층)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li> <li>○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li> <li>○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경사지를 성·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li> <li>○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li> <li>○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li> </ul>		

【 범례 표 (변경)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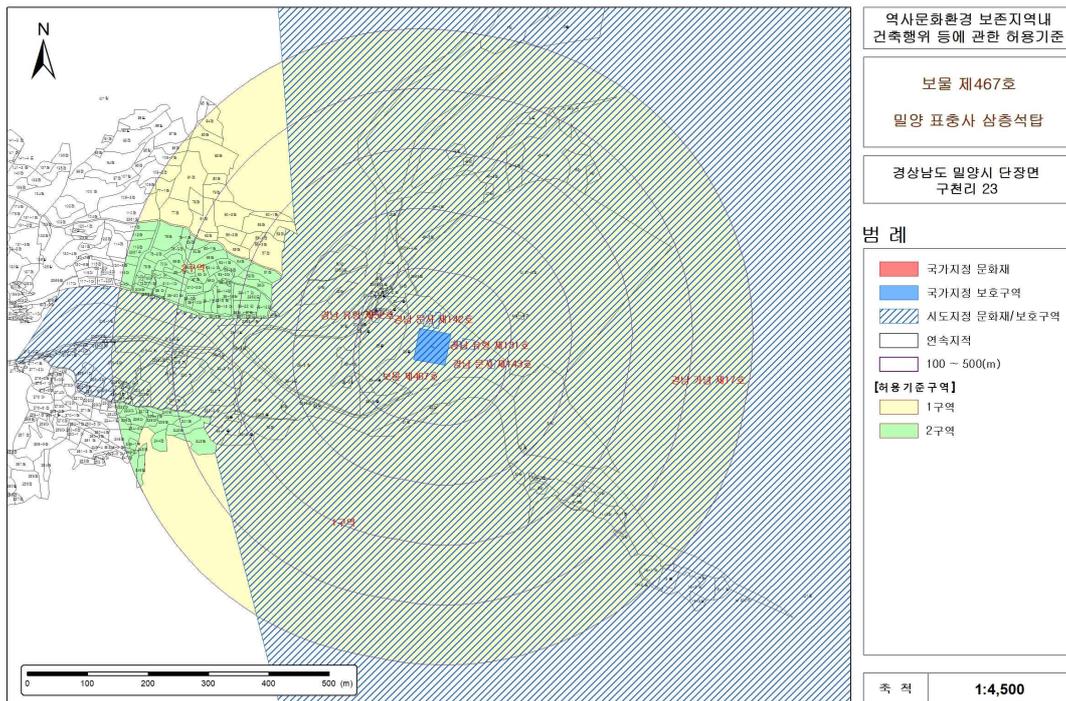
구 분	허 용 기 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○ 최고높이 14m 이하	○ 최고높이 18m 이하	
제3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 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<p>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</p> <p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p> <p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p> <p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(고물상, 폐기물 처분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</p> <p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p> <p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p> <p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p>		

▣ 보물 제467호 “밀양 표충사 삼층석탑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
【 당 초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【 변경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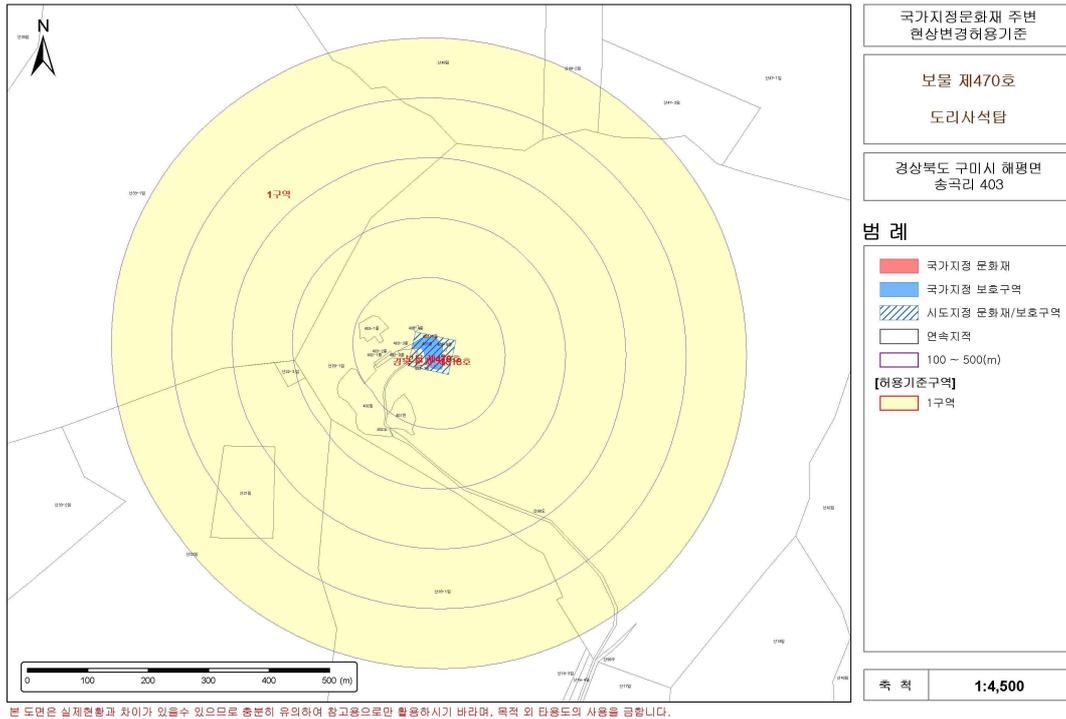
**【 범례 표(당초) 】**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원지형 보존		
공통사항	○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(표층사 경내는 제외) ○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○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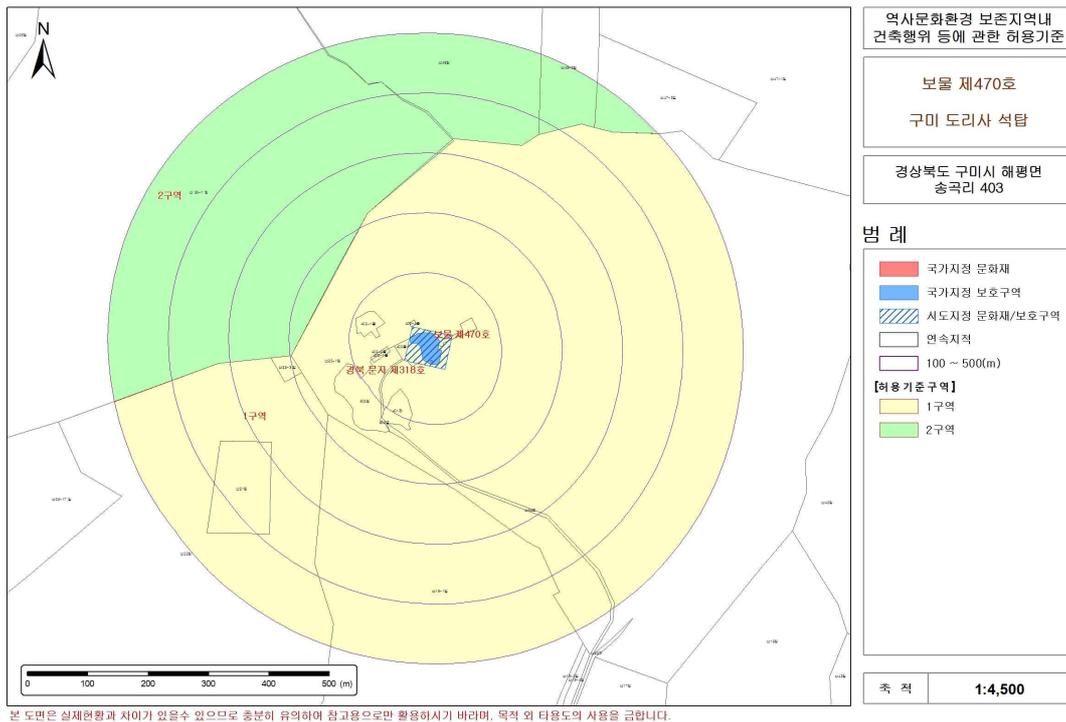
【 범례 표(변경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○ 최고높이 5m 이하	○ 최고높이 7.5m 이하	단, 대지에 한하며 그밖에 지목은 개별심의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(표층사 경내는 제외)</li> <li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(고물상, 폐기물 처분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</li> <li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li> <li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li> </ul>		

## ▣ 보물 제470호 “구미 도리사 석탑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【 당 초 】



## 【 변경 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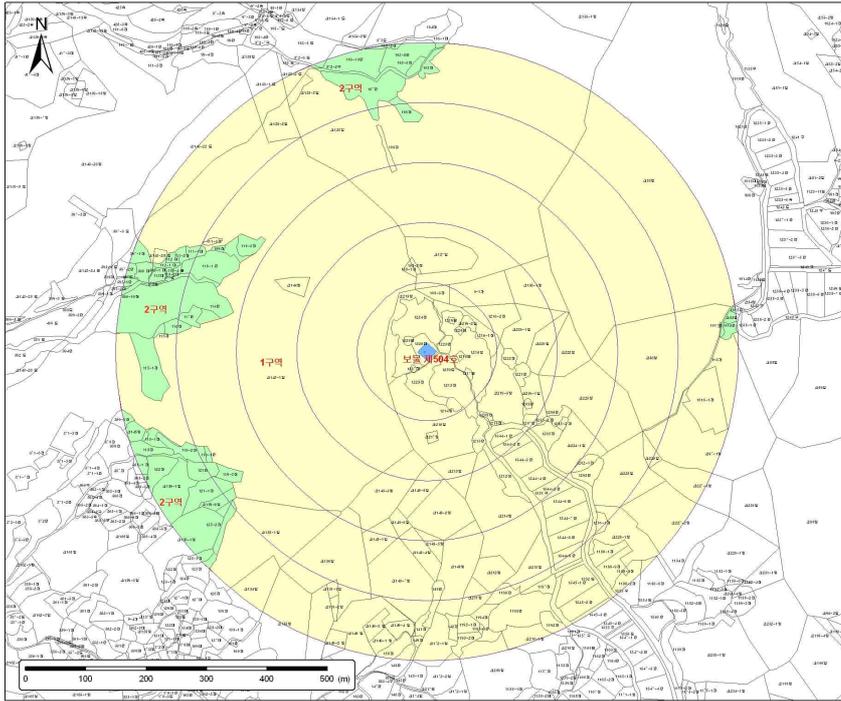
【 범례 표 (당초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원지형 보존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</li> <li>○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(2층), 경사지붕 12m(2층)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li> <li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 경사지를 성·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li> <li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li> </ul>		

【 범례 표 (변경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 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<p>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</p> <p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p> <p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p> <p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(고물상, 폐기물 처분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</p> <p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p> <p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p> <p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p>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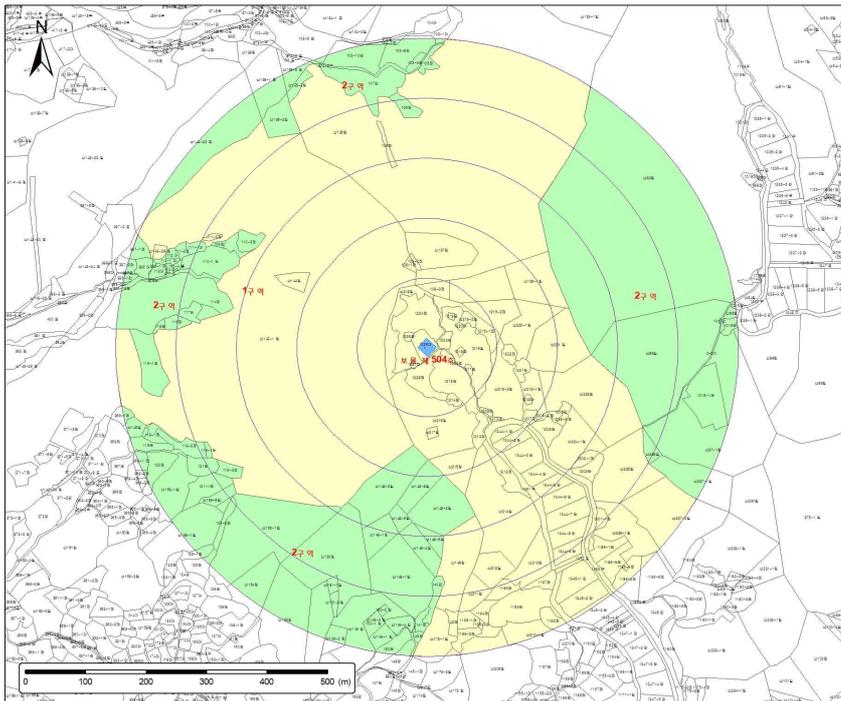
# ▣ 보물 제504호 “영광 신천리 삼층석탑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【 당 초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	
보물 제504호 영광신천리삼층석탑	
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1226	
<b>범례</b>	
<span style="color: red;">■</span>	국가지정 문화재
<span style="color: blue;">■</span>	국가지정 보호구역
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">□</span>	연속지적
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">□</span>	100 ~ 500(m)
<b>【허용기준구역】</b>	
<span style="background-color: yellow;">■</span>	1구역
<span style="background-color: lightgreen;">■</span>	2구역
<b>축척</b>	<b>1:4,500</b>

# 【 변경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	
보물 제504호 영광 신천리 삼층석탑	
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1226	
<b>범례</b>	
<span style="color: red;">■</span>	국가지정 문화재
<span style="color: blue;">■</span>	국가지정 보호구역
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">□</span>	연속지적
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">□</span>	100 ~ 500(m)
<b>【허용기준구역】</b>	
<span style="background-color: yellow;">■</span>	1구역
<span style="background-color: lightgreen;">■</span>	2구역
<b>축척</b>	<b>1:4,500</b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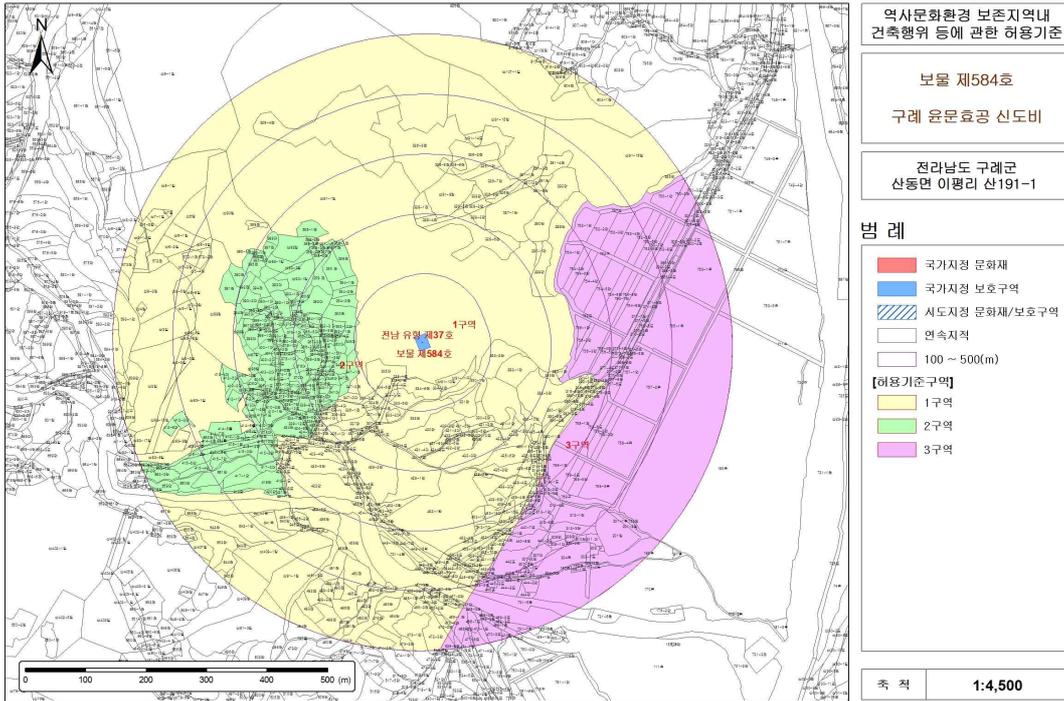
【 범례 표 (당초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원지형 보존		
제2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</li> <li>○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(2층), 경사지붕 12m(2층)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li> <li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 경사지를 성·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li> <li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li> </ul>		

【 범례 표 (변경)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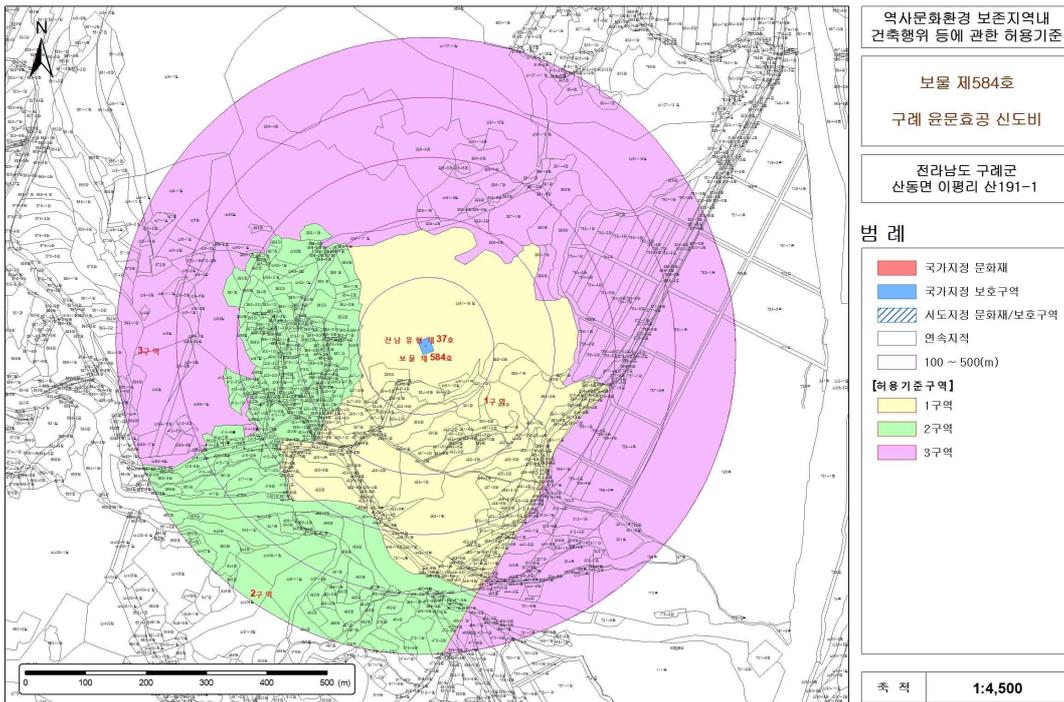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<p>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</p> <p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 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 함)</p> <p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 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 는 재료 권장.</p> <p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리시설(고물상, 폐기물처 리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.</p> <p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범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 외,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 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p> <p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p> <p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p>		

# ☐ 보물 제584호 “구례 윤문효공 신도비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【 당 초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# 【 변경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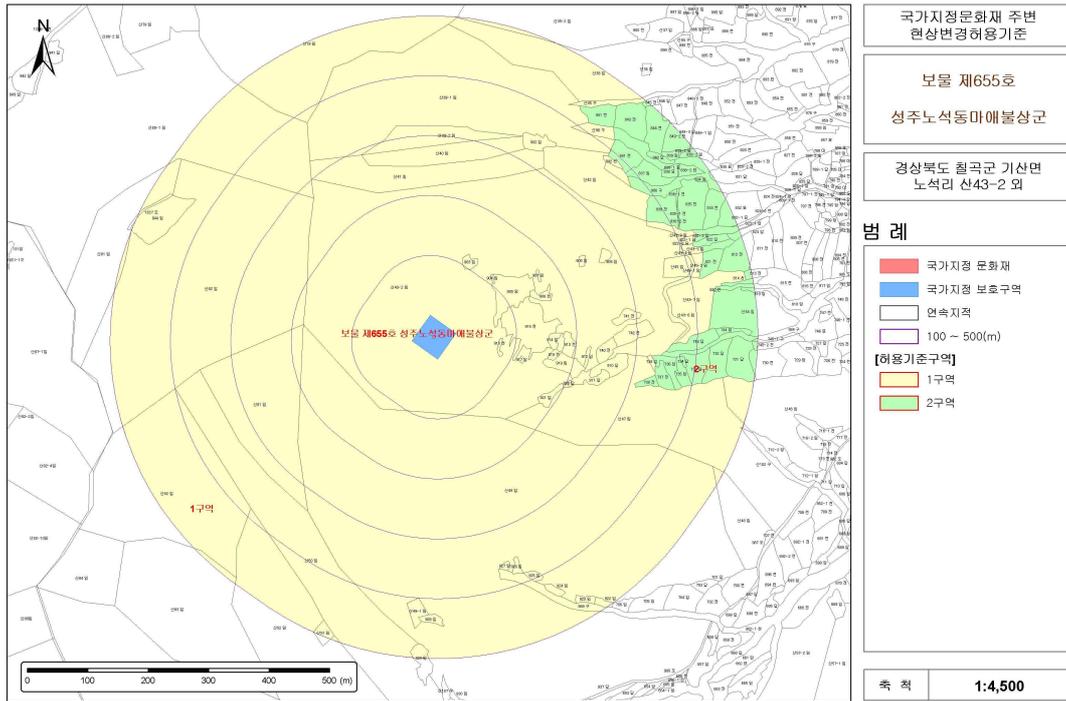
【 범례 표 (당초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○ 최고높이 5m 이하	○ 최고높이 7.5m 이하	
제3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</li> <li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li> <li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(고물상, 폐기물 처분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</li> <li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li> <li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li> </ul>		

【 범례 표 (당초)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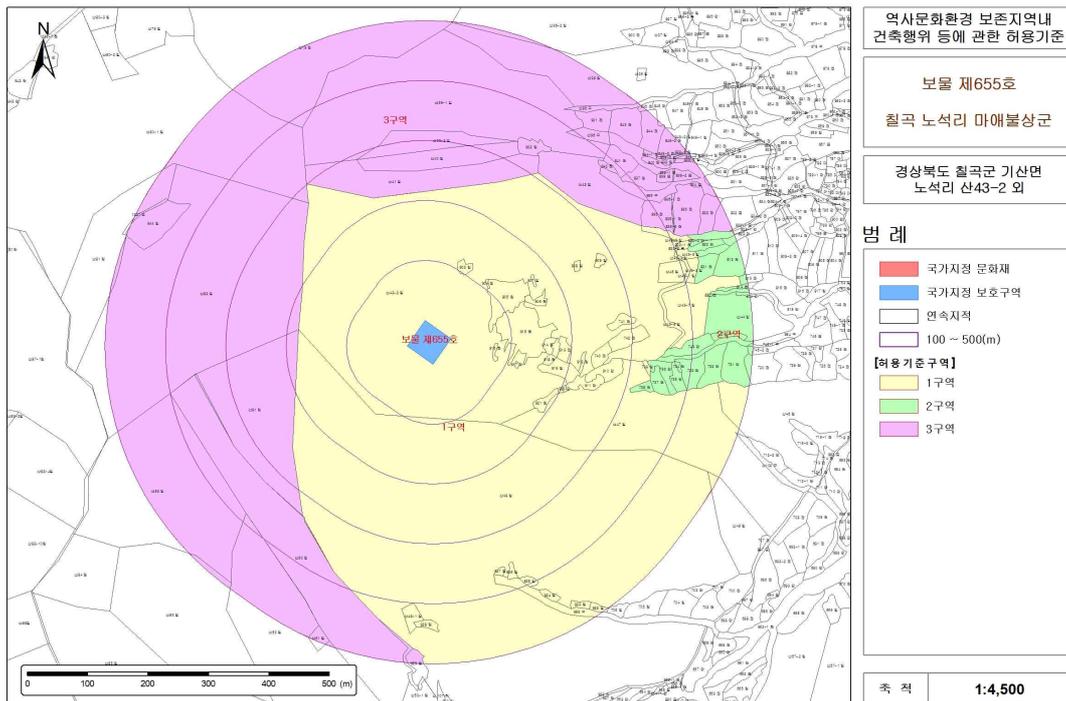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○ 최고높이 5m 이하	○ 최고높이 7.5m 이하	
제3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<p>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</p> <p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p> <p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p> <p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(고물상, 폐기물 처분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</p> <p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p> <p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p> <p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p>		

▣ 보물 제655호 “칠곡 노석리 마애불상군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
【 당 초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【 변경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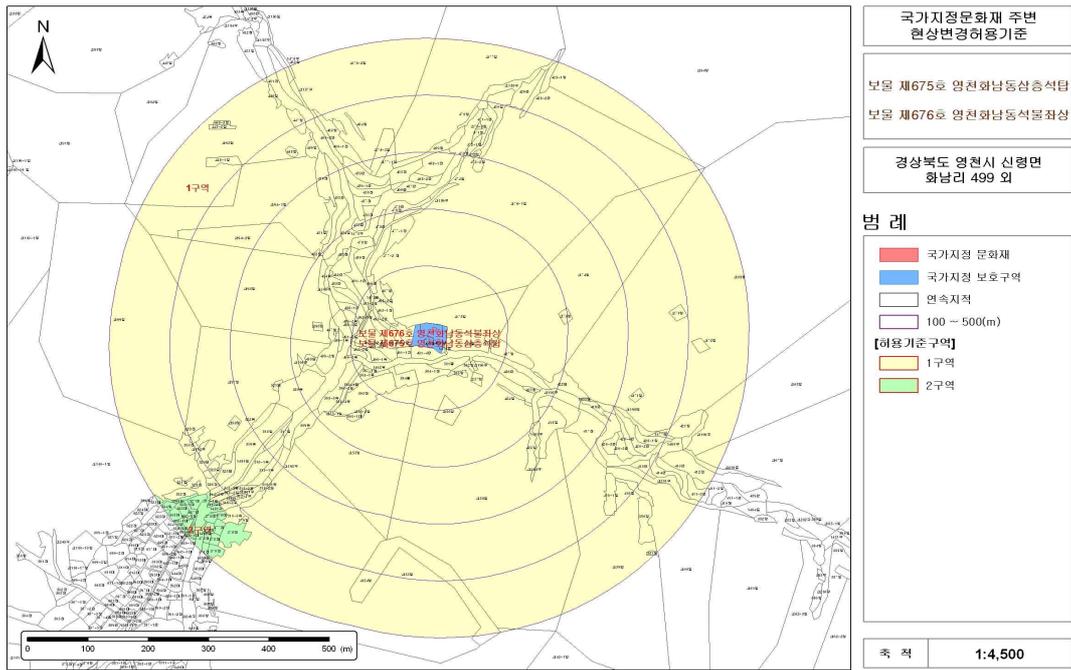
【 범례 표 (당초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원지형 보존		
제2구역	○ 최고높이 5m(1층) 이하	○ 최고높이 7.5m(1층) 이하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</li> <li>○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(2층), 경사지붕 12m(2층)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li> <li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 경사지를 성·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li> <li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li> </ul>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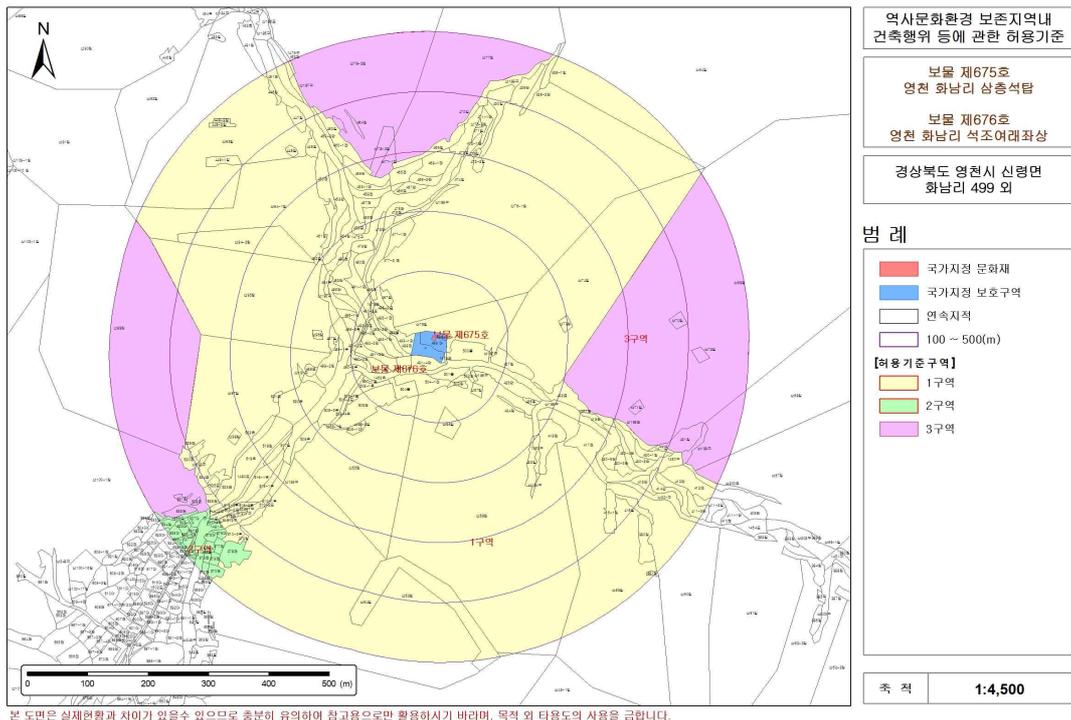
【 범례 표 (변경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○ 최고높이 5m 이하	○ 최고높이 7.5m 이하	
제3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 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<p>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</p> <p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p> <p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p> <p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(고물상, 폐기물 처분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</p> <p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p> <p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p> <p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p>		

▣ 보물 제675호 “영천 화남리 삼층석탑”, 보물 제676호 “영천 화남리 석조여래좌상”  
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
【 당 초 】



【 변경 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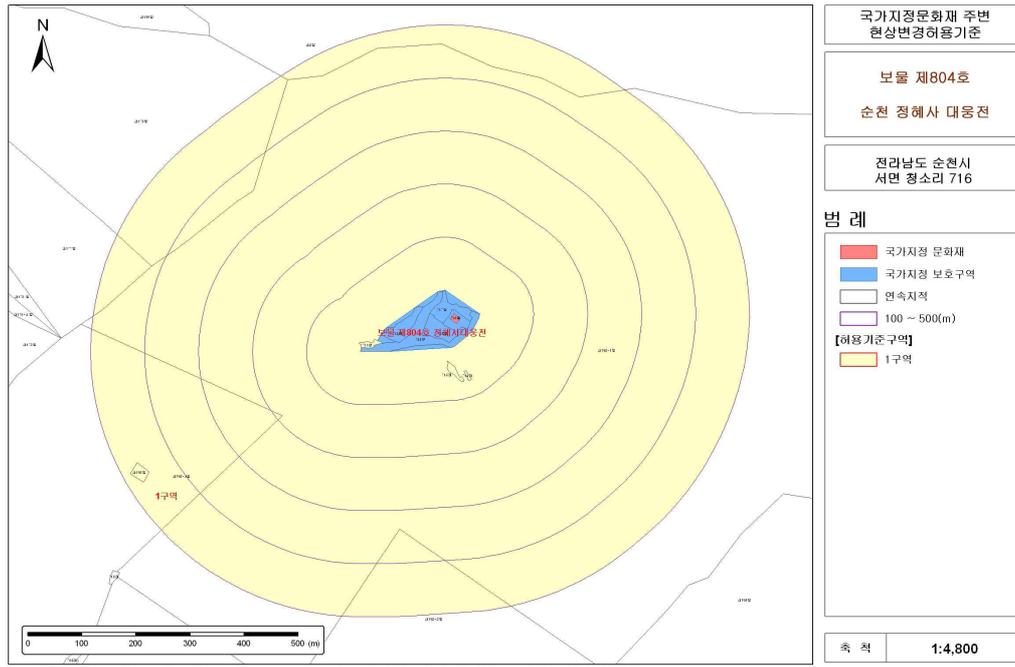
【 범례 표 (당초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원지형 보존		
제2구역	-	○최고높이 7.5m(1층) 이하	
제3구역	○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<p>○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(한광사 경내는 제외)</p> <p>○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.</p> <p>○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(2층), 경사지붕 12m(2층)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p> <p>○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p> <p>○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.</p> <p>○경사지를 성·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p> <p>○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p> <p>○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p> <p>○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p>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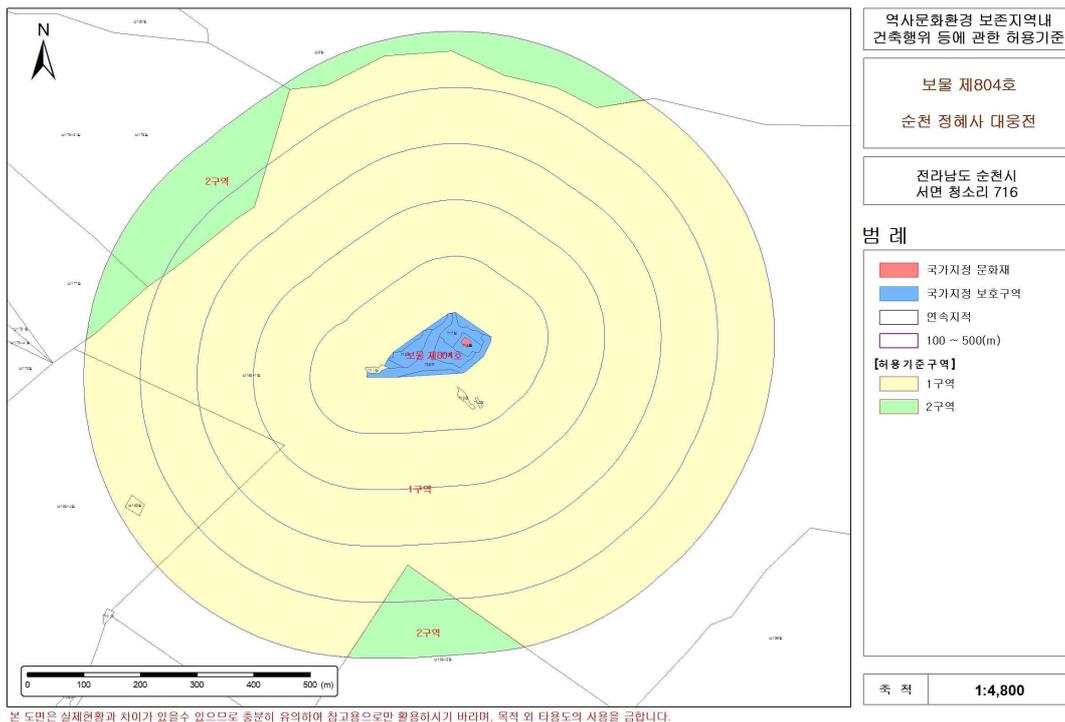
【 범례 표 (변경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-	○ 최고높이 7.5m 이하	
제3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 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<p>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</p> <p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p> <p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p> <p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(고물상, 폐기물 처분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</p> <p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범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p> <p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p> <p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p>		

▣ 보물 제804호 “순천 정혜사 대웅전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
【 당 초 】



【 변경 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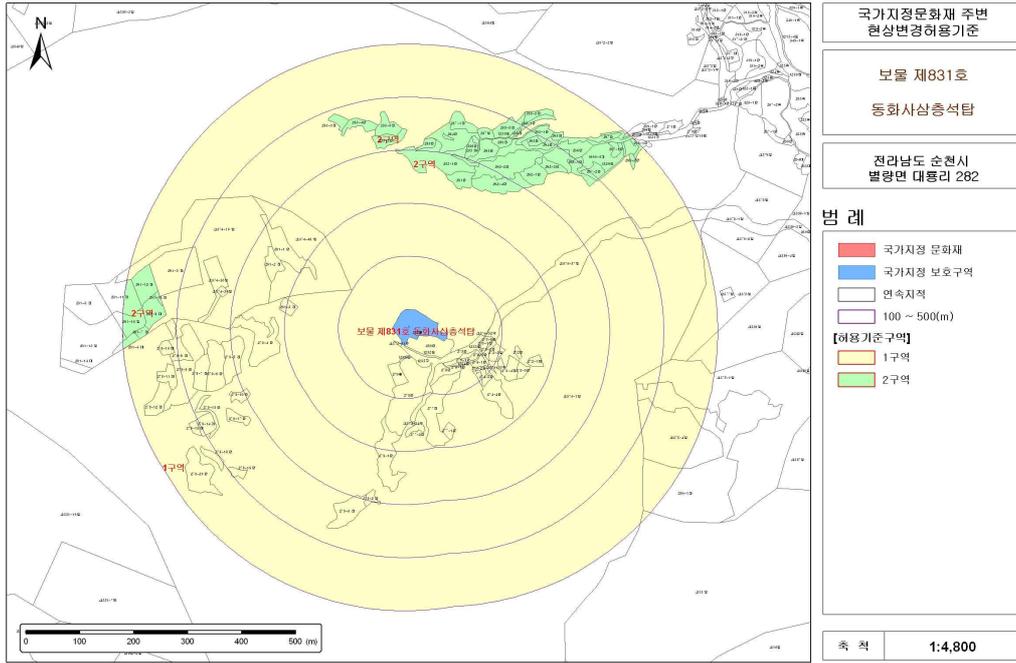
【 범례 표 (당초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원지형 보존		
공통사항	○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 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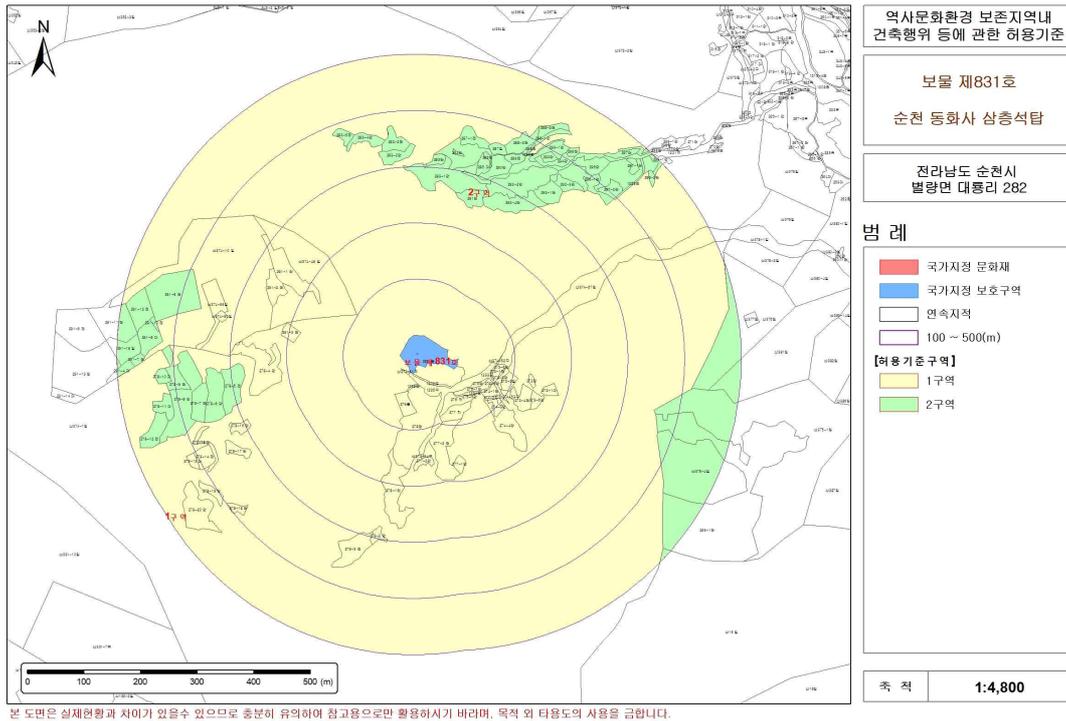
【 범례 표 (변경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 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리시설(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.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		

▣ 보물 제831호 “순천 동화사 삼층석탑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
【 당 초 】



【 변경 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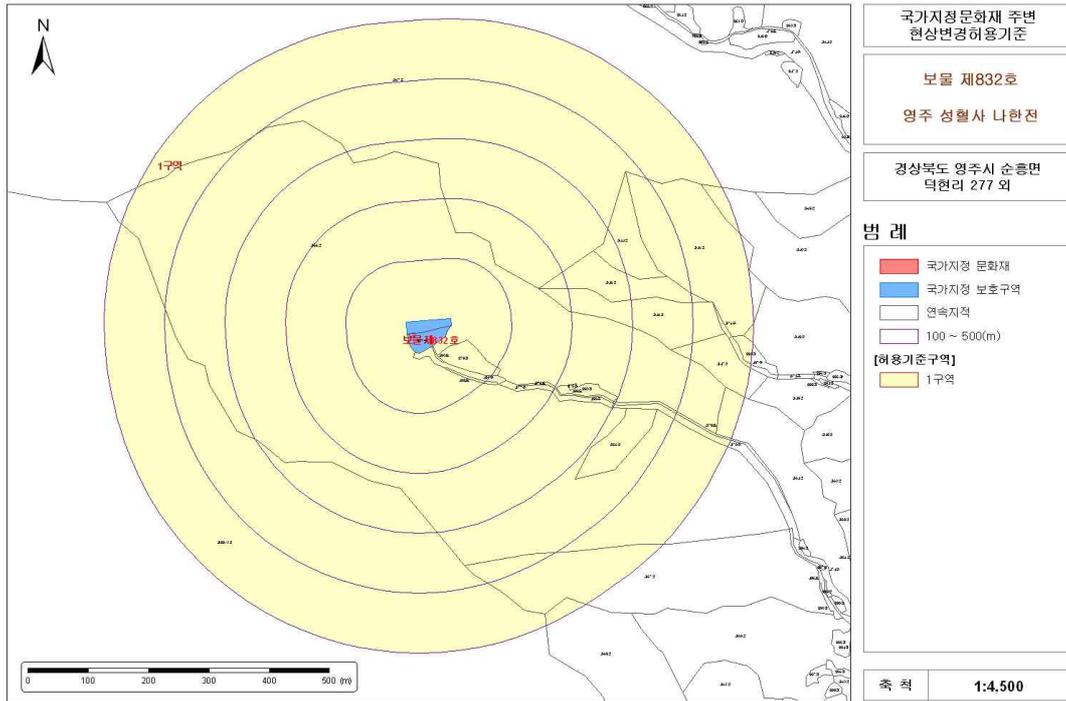
【 범례 표 (당초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원지형 보존		
제2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</li> <li>○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(2층), 경사지붕 12m(2층)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li> <li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 경사지를 성·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li> <li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li> </ul>		

【 범례 표 (변경)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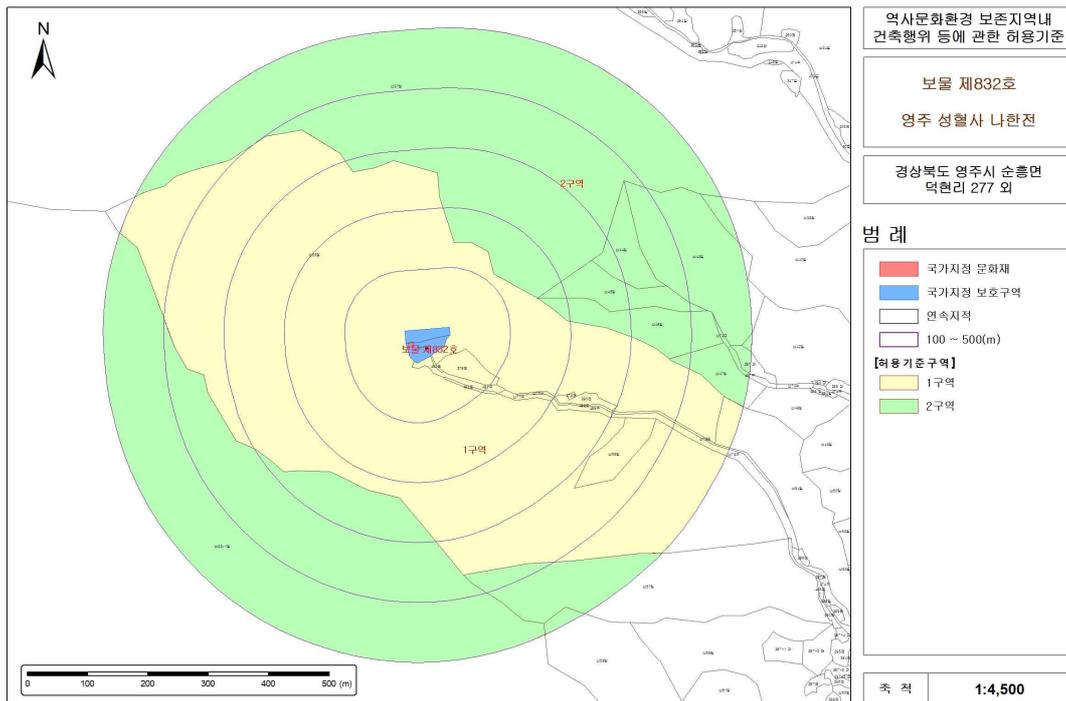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<p>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</p> <p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 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 함)</p> <p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p> <p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리시설(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.</p> <p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범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p> <p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p> <p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p>		

▣ 보물 제832호 “영주 성혈사 나한전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
【 당 초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【 변경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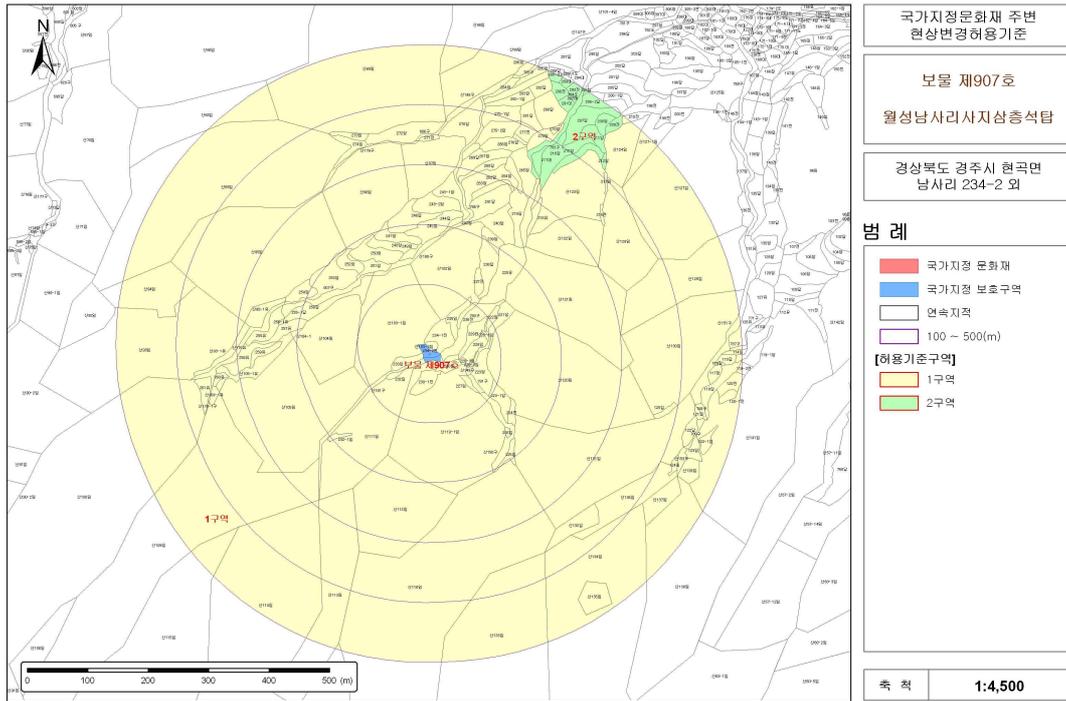
【 범례 표 (당초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
제1구역	○ 원지형 보존	
공통사항	○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(성혈사 경내는 제외) 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	

【 범례 표 (변경)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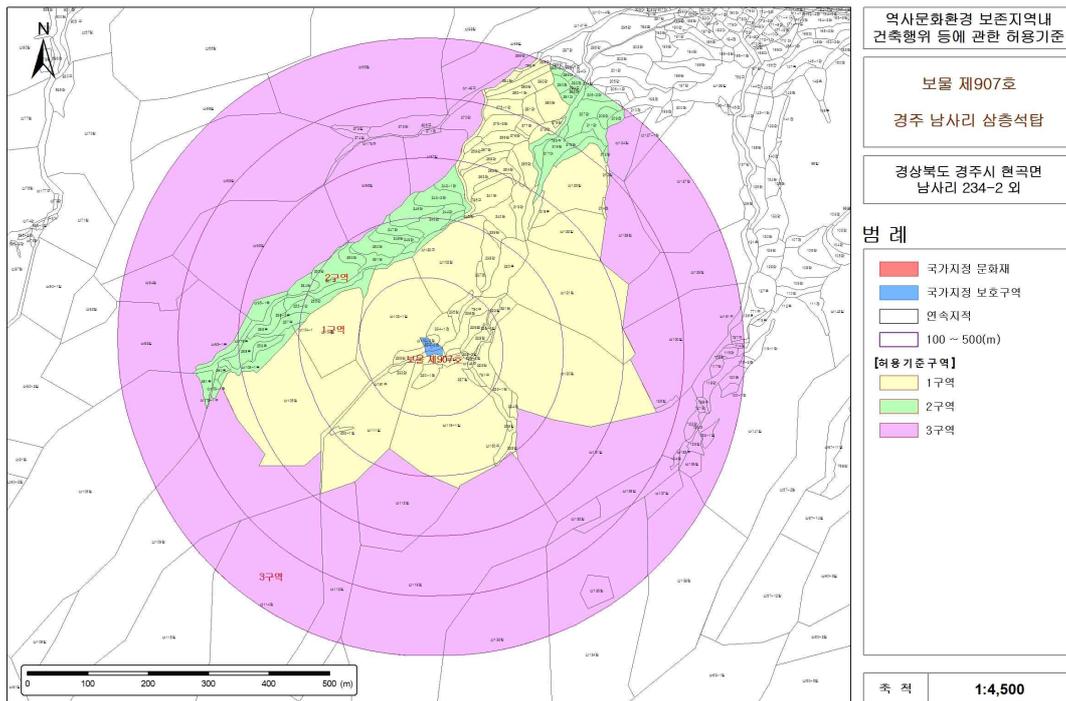
구 분	허 용 기 준		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비고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 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 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(고물상, 폐기물 처분 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 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 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		

▣ 보물 제907호 “경주 남사리 삼층석탑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
【 당 초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【 변경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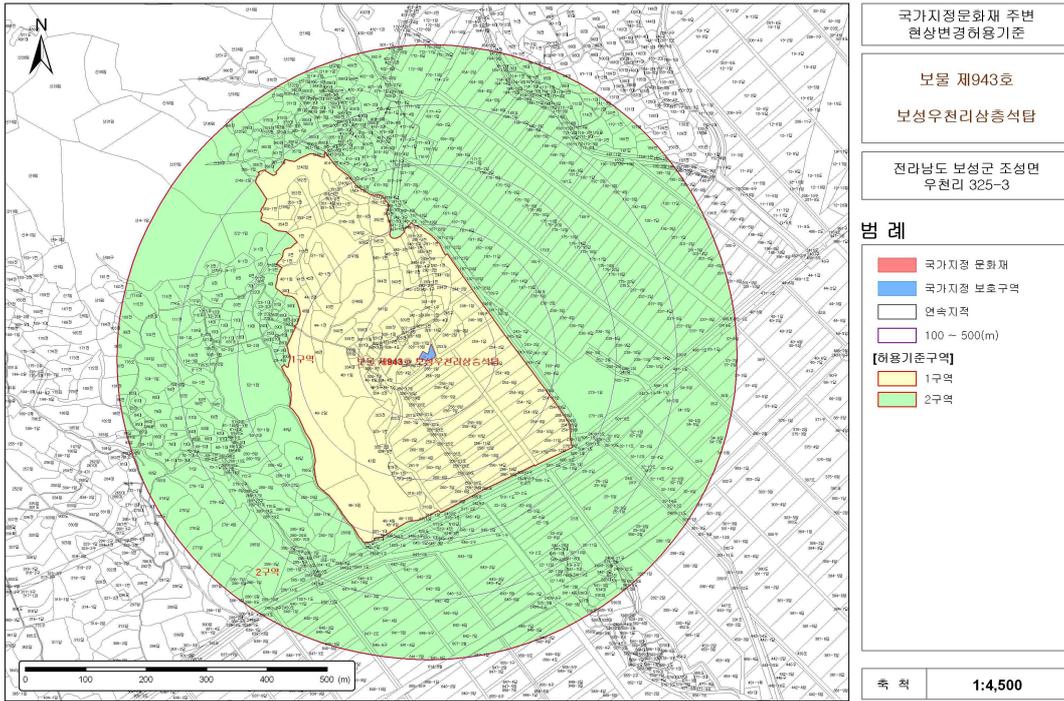
【 범례 표 (당초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)	
제1구역	○ 원지형 보존		
제2구역	○ 최고높이 5m(1층) 이하	○ 최고높이 7.5m(1층) 이하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</li> <li>○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(2층), 경사지붕 12m(2층)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li> <li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 경사지를 성·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li> <li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li> </ul>		

【 범례 표 (변경)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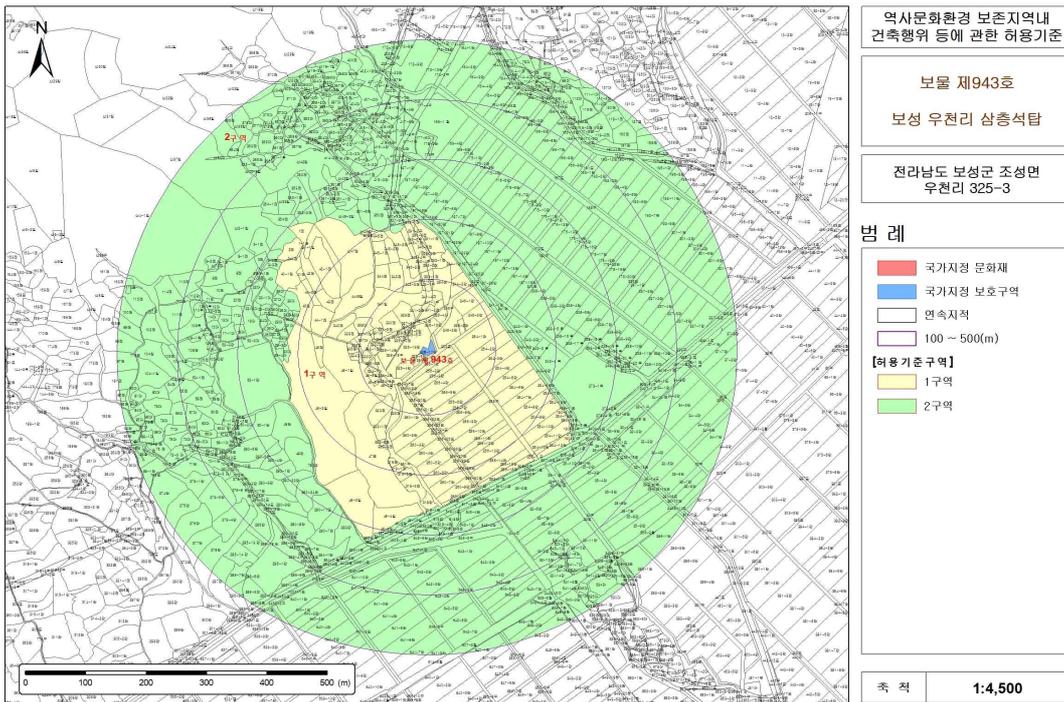
구 분	허 용 기 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○ 최고높이 5m 이하	○ 최고높이 7.5m 이하	
제3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<p>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</p> <p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p> <p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p> <p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(고물상, 폐기물 처분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</p> <p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p> <p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p> <p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p>		

# ▣ 보물 제943호 “보성 우천리 삼층석탑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【 당 초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# 【 변경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【 범례 표 (당초)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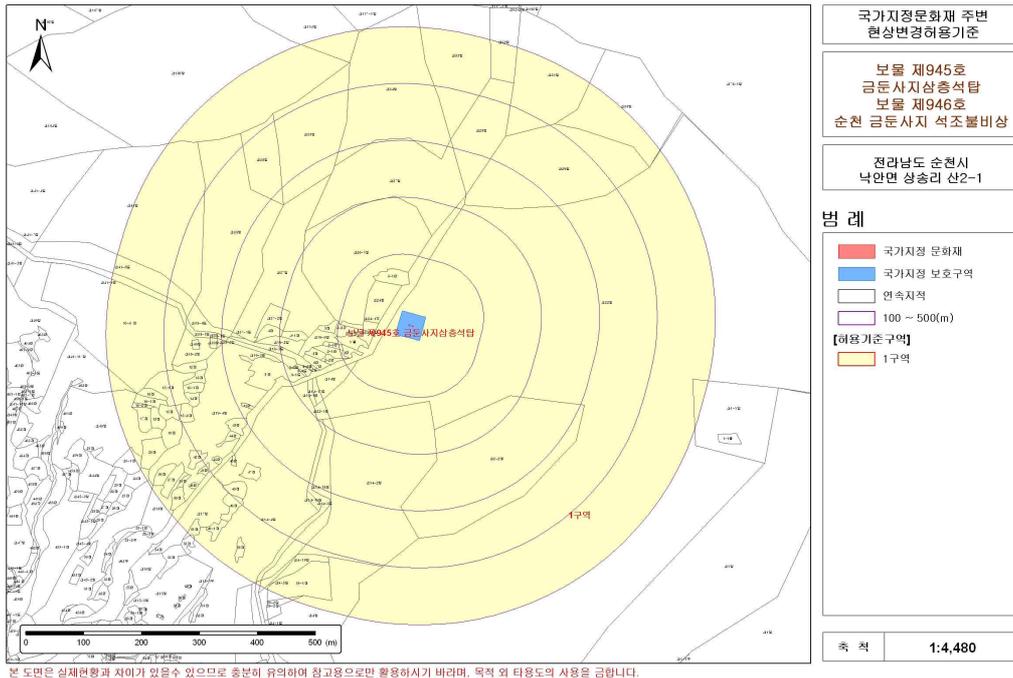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이상)	
제1구역	○원지형 보존 - 기존범위 내 개축·재축 가능		
제2구역	○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</li> <li>○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(2층), 경사지붕 12m(2층)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li> <li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 경사지를 성·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li> <li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li> </ul>		

【 범례 표 (변경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</li> <li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 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 함)</li> <li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리시설(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범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li> <li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li> </ul>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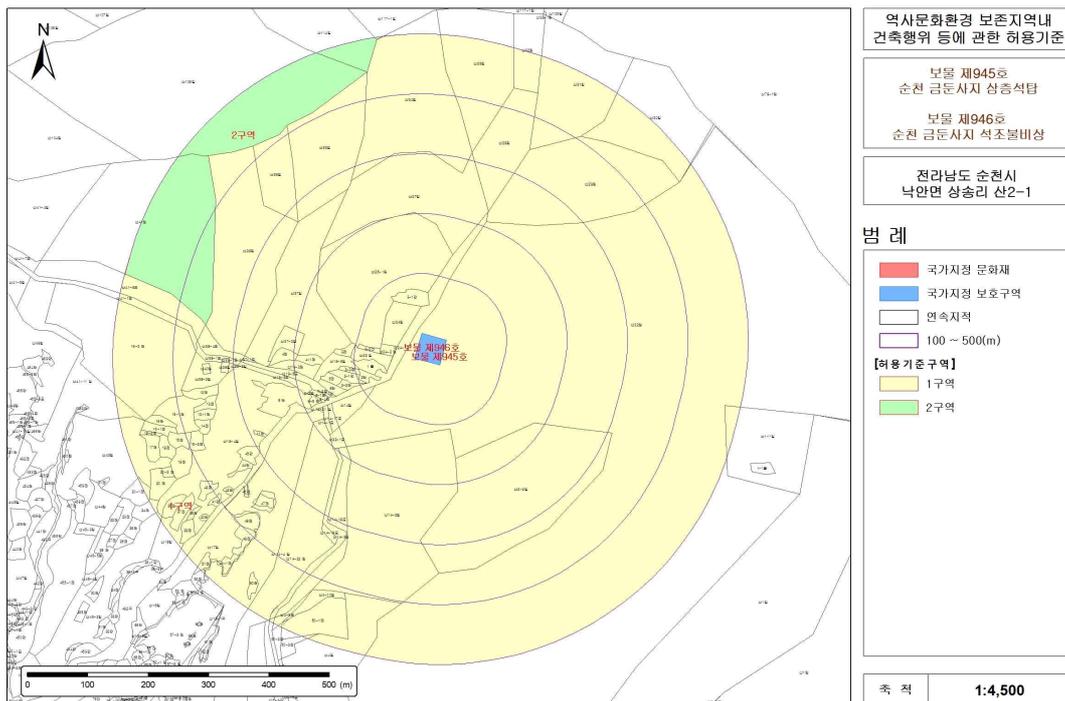
▣ 보물 제945호 “순천 금둔사지 삼층석탑”, 보물 제946호 “순천 금둔사지 석조불비상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【 당 초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중반이 유익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【 변경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중반이 유익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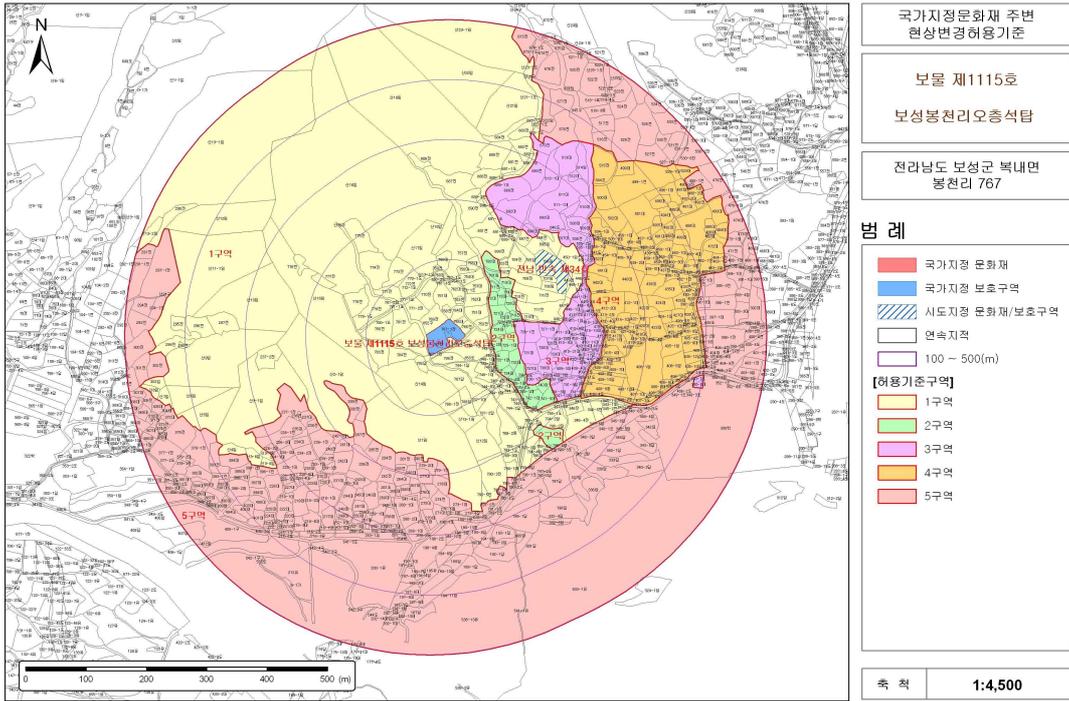
【 범례 표 (당초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원지형 보존		
공통사항	○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 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		

【 범례 표 (변경)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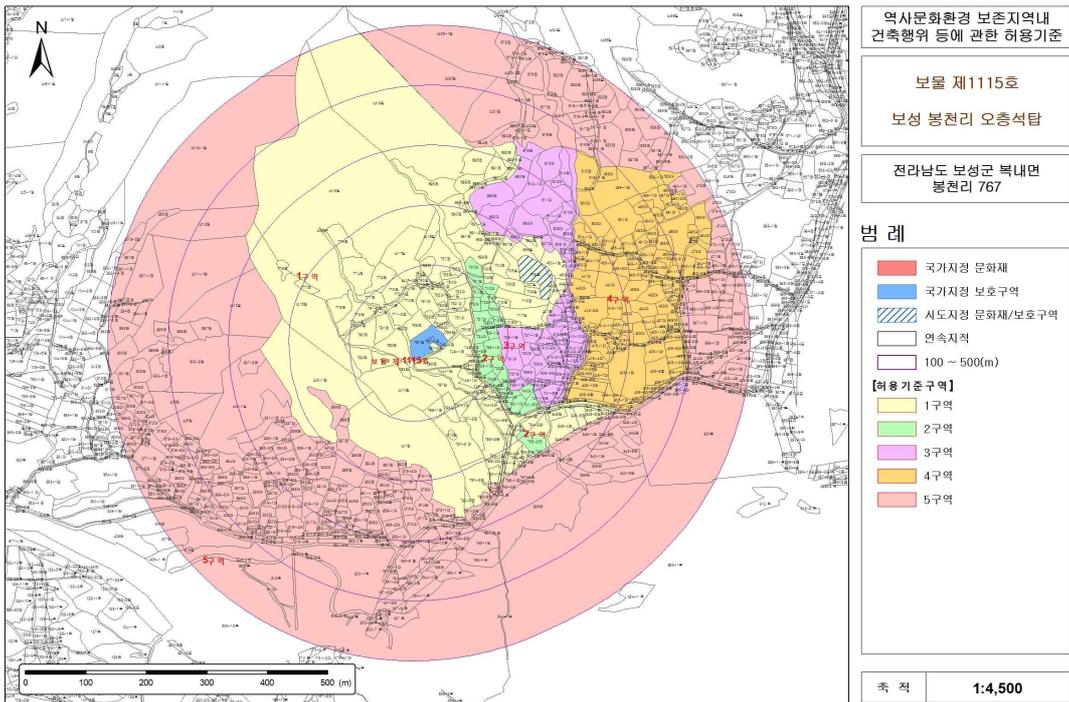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 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리시설(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.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		

▣ 보물 제1115호 “보성 봉천리 오층석탑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
【 당 초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【 변경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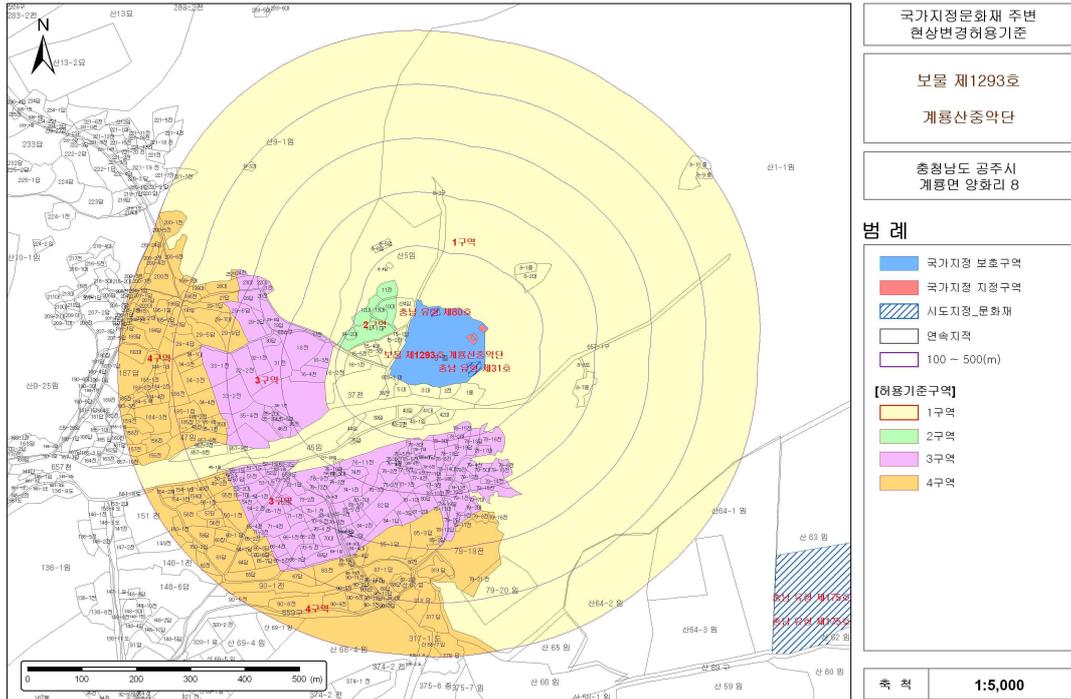
【 범례 표 (당초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이상)	
제1구역	○ 원지형 보존 - 기존 범위내 개축 가능		
제2구역	○ 최고높이 5m (1층) 이하	○ 최고높이 7.5m(1층) 이하	터파기시 관계기관 입회
제3구역	○ 최고높이 8m (2층) 이하	○ 최고높이 12m(2층) 이하	
제4구역	○ 최고높이 14m (4층) 이하	○ 최고높이 18m(4층) 이하	
제5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</li> <li>○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(2층), 경사지붕 12m(2층)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li> <li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 경사지를 성·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li> <li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li> </ul>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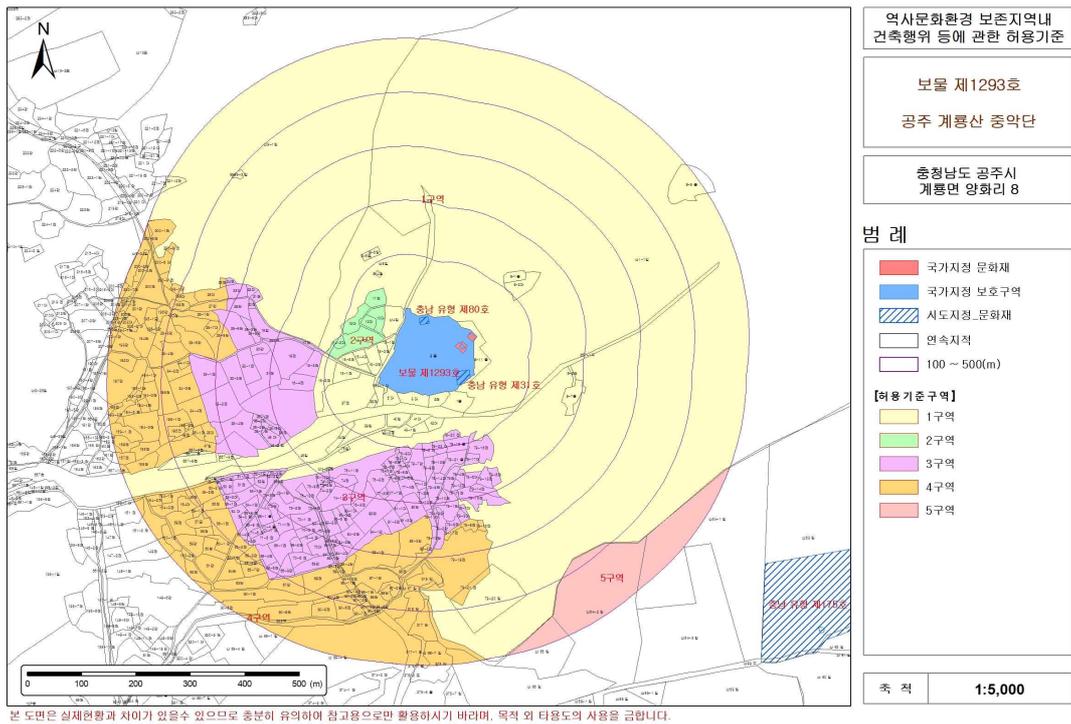
【 범례 표 (변경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○ 최고높이 5m 이하	○ 최고높이 7.5m 이하	터 파 기 시 관 계 기 관 입 회
제3구역	○ 최고높이 8m 이하	○ 최고높이 12m 이하	
제4구역	○ 최고높이 14m 이하	○ 최고높이 18m 이하	
제5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<p>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</p> <p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 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 함)</p> <p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 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 는 재료 권장.</p> <p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리시설(고물상, 폐기물처 리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.</p> <p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 외,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 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p> <p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p> <p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p>		

# ☐ 보물 제1293호 “공주 계룡산 중약단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【 당 초 】



# 【 변경 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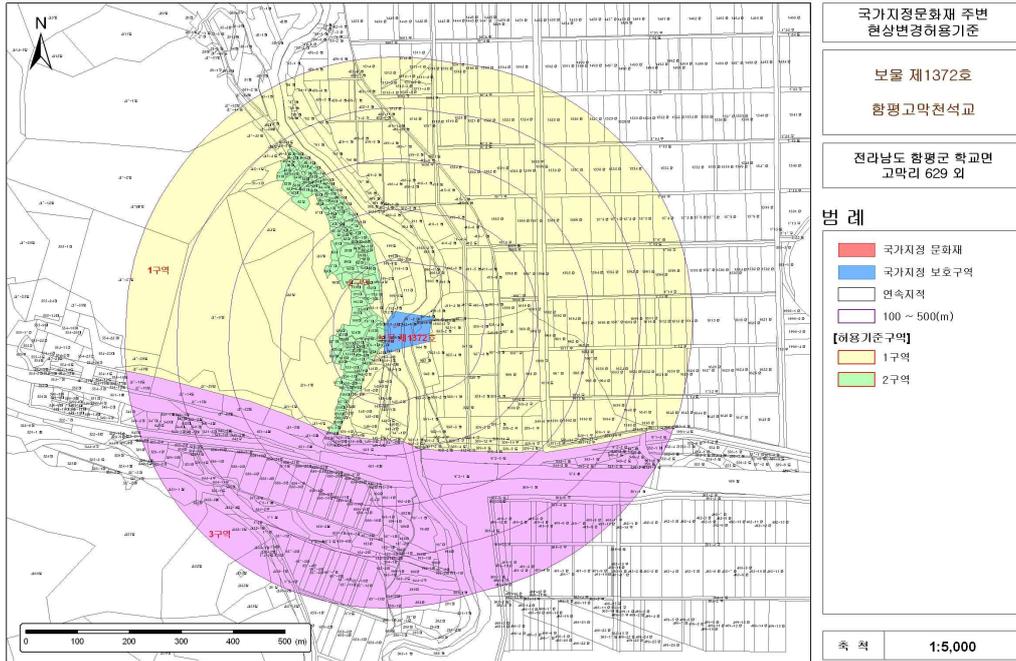
【 범례 표 (당초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원지형 보존		
제2구역	-	○ 최고높이 7.5m(1층) 이하	
제3구역	○ 최고높이 8m(2층) 이하	○ 최고높이 12m(2층) 이하	
제4구역	○ 최고높이 14m(4층) 이하	○ 최고높이 18m(4층) 이하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</li> <li>○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(2층), 경사지붕 12m(2층)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li> <li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 경사지를 성·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li> <li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li> </ul>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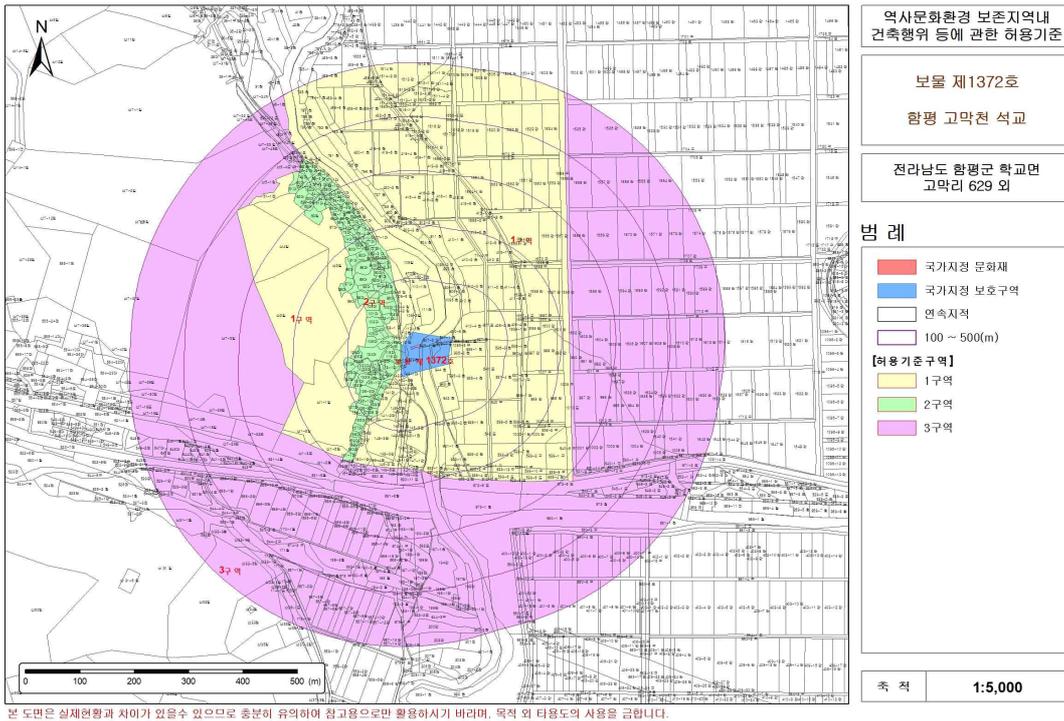
【 범례 표 (변경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-	○ 최고높이 7.5m 이하	
제3구역	○ 최고높이 8m 이하	○ 최고높이 12m 이하	
제4구역	○ 최고높이 14m 이하	○ 최고높이 18m 이하	
제5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 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 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리시설(고물상, 폐기물처리 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 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 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		

# ▣ 보물 제1372호 “함평 고막천 석교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【 당 초 】



# 【 변경 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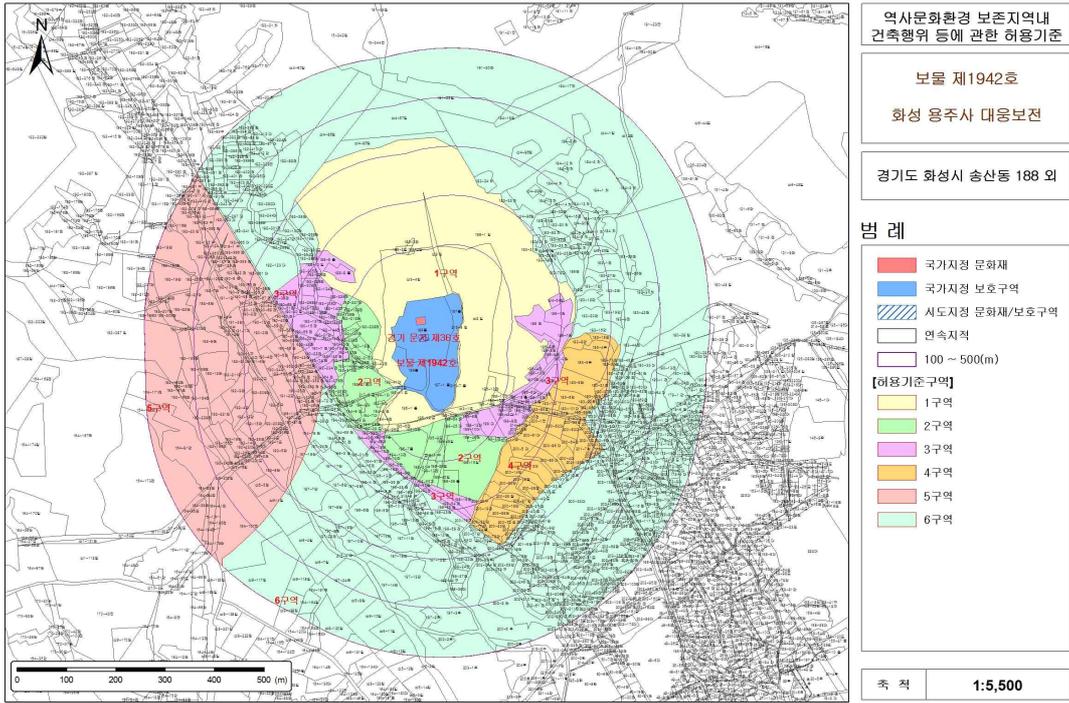
【 범례 표 (당초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원지형 보존		
제2구역	○ 최고높이 8m(2층) 이하	○ 최고높이 12m(2층) 이하	
제3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</li> <li>○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(2층), 경사지붕 12m(2층)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li> <li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.</li> <li>○ 경사지를 성·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li> <li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li> </ul>		

【 범례 표 (변경)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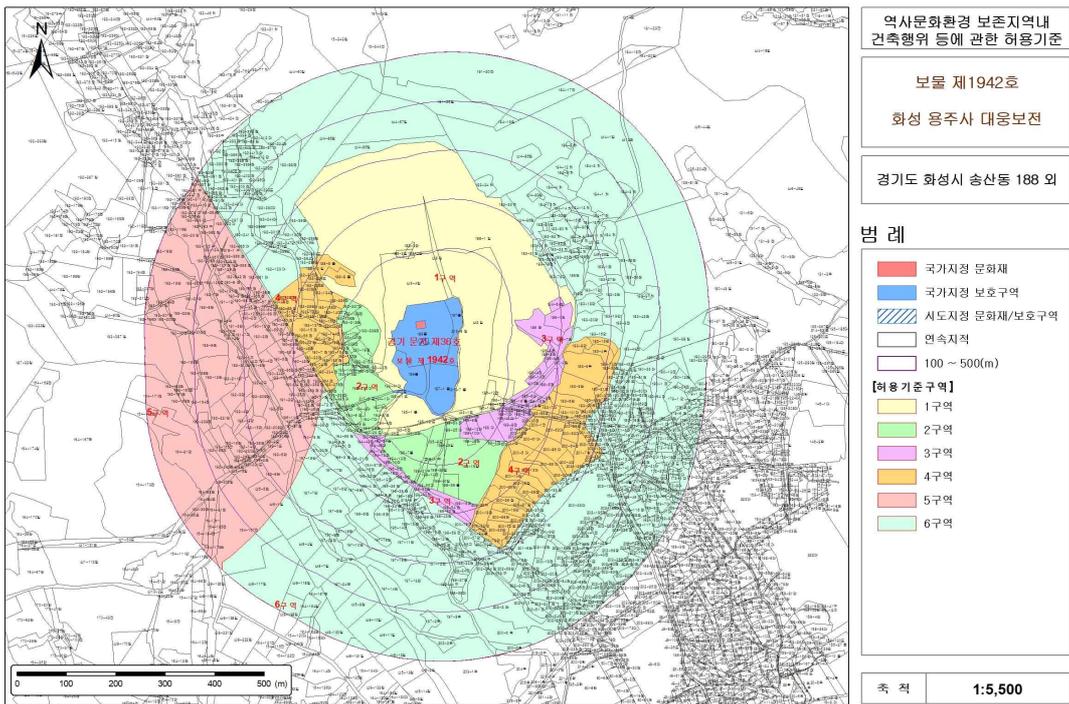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3:10 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○ 최고높이 8m 이하	○ 최고높이 12m 이하	
제3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<p>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</p> <p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 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 함)</p> <p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 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 는 재료 권장.</p> <p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리시설(고물상, 폐기물처 리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.</p> <p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 외,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 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p> <p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p> <p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p>		

# ☐ 보물 제1942호 “화성 용주사 대웅보전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【 당 초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중반이 유익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# 【 변경 】



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중반이 유익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.

【 범례 표 (당초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:3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○ 최고높이 5m 이하	○ 최고높이 7.5m 이하	
제3구역	○ 최고높이 8m 이하	○ 최고높이 12m 이하	
제4구역	○ 최고높이 11m 이하	○ 최고높이 15m 이하	
제5구역	○ 사적 제206호 “화성 용릉과 건릉”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		
제6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·보수 가능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</li> <li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li> <li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li> <li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(고물상, 폐기물 처분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</li> <li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li> <li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li> <li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li> <li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li> </ul>		

【 범례 표 (변경) 】

구 분	허 용 기 준		비 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:3이상)	
제1구역	○ 개별심의		
제2구역	○ 최고높이 5m 이하	○ 최고높이 7.5m 이하	
제3구역	○ 최고높이 8m 이하	○ 최고높이 12m 이하	
제4구역	○ 최고높이 11m 이하	○ 최고높이 15m 이하	
제5구역	○ 사적 제206호 “화성 읍릉과 건릉”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		
제6구역	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-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	
공통사항	<p>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</p> <p>○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(단,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,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)</p> <p>○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(예 : 지붕 색상 - 회색, 밤색 등).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</p> <p>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(고물상, 폐기물 처분시설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</p> <p>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</p> <p>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.</p> <p>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</p> <p>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</p>		

**【보고사항】**

안건번호 건축 2020-10-012

**12.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**

**가. 보고사항**

충남 공주시 소재 보물 제1293호 「공주 계룡산 중악단」 주변 단독주택 진출입로 개설 등 허가신청 11건에 대하여 자체검토회의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.

**나. 처리내용**

문화재명	소재지 (신청인)	사업내용	처리결과	처리일자
소 계		11건	원안가결 8건 조건부가결 2건 부결 1건	
보물 제1293호 공주 계룡산 중악단	충남 공주 (○○○)	<input type="checkbox"/> 단독주택 진출입로 개설 ○ 위치 :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62번지 외 2필지 * 제4구역(보호구역에서 443m 이격) ○ 사업내용 : 진출입로 개설 - 사업면적 : 205㎡ - 콘크리트포장 : 폭 4m, t=0.20m * 단독주택 개요 - 건축(연)면적 : 114.45㎡ - 높이 : 7.5m	원안가결	'20.09.24

문화재명	소재지 (신청인)	사업내용	처리결과	처리일자
보물 제605호 고령 장거리 암각화	경북 고령 (○○○)	<input type="checkbox"/> 자원순환시설 신축 ○ 위치 : 고령군 대가야읍 내곡리 395번지 외 5필지 * 제4구역(보호구역에서 480m 이격, 개별법) ○ 사업내용 : 자원순환시설 신축 - 사업면적 : 2,737㎡ - 건축(연)면적 : 990.51㎡ - 높이 : 13m - 구조 : 일반철골구조	원안가결	'20.09.24
보물 제242호 안동 개목사 원통전	경북 안동 (○○○)	<input type="checkbox"/> 도로선형개량 공사(변경허가) ○ 위치 :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888번지 일원 * 제1구역(보호구역에서 10m 이격) ○ 사업내용 : 도로선형개량 공사 - L=592.0m, B=0.2~16.2m - 콘크리트포장 A=1,123.6㎡, L=570.0m - 옹벽블록 H=2.0~2.5m, L=18.0m * '20년 3월 1차 자체검토회의 : 조건부 가결 - 절,성토 부분을 최소화하여 사업 시행 * '20년 6월 2차 자체검토회의 : 부결 - 역사문화경관 저해	원안가결	'20.09.24
국보 제187호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	경북 영양 (○○○)	<input type="checkbox"/> 단독주택 신축(변경허가) ○ 위치 : 영양군 입암면 삼산리 383-2 * 제1구역(보호구역에서 480m 이격) ○ 사업내용(기간연장에 따른 재허가) - 대지면적 : 560㎡ - 건축(연)면적 : 86.17㎡ - 층수/높이 : 1층/5.5m - 구조 : 일반목구조 * '19년 4월 제1차 자체검토회의 : 원안가결	원안가결	'20.09.24

문화재명	소재지 (신청인)	사업내용	처리결과	처리일자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물 제323호 청도 석빙고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경북 청도 (○○○)</p>	<p>□ 석빙고, 청도읍성 주변 정비사업 실시</p> <p>○ 위치 : 청도군 화양읍 서상리 341-1의</p> <p>* 보호구역 및 제1구역</p> <p>○ 사업내용</p> <p>- 1구간 : 마사토 포장 및 잔디식재 A=971m<sup>2</sup> 등</p> <p>- 2구간</p> <p>· 흙콘크리트 포장 A=800m<sup>2</sup> 및 잔디블록 포장 A=213m<sup>2</sup></p> <p>· 거친돌 석축 설치 H=0.5m, L=12.5m</p> <p>· 추가형 정자(5,100*3,200*2,800) 1개소 설치</p> <p>· 교목 7주 및 관목 3,780주 식재 등</p> <p>- 3구간</p> <p>· 흙콘크리트 포장 A=647m<sup>2</sup></p> <p>· 추가형 정자(5,100*3,200*2,800) 2개소 설치</p> <p>· 교목 12주 및 관목 700주 식재 등</p> <p>- 4구간</p> <p>· 목교(W=1,000, L=3,700) 3개소 철거 및 설치</p> <p>· 교목 80주 및 관목 1,280주 식재 등</p> <p>- 5구간</p> <p>· 잔디블록 포장 A=1,196m<sup>2</sup> 및 흙콘크리트 포장 A=69m<sup>2</sup></p> <p>· 교목 35주 및 관목 910주 식재 등</p> <p>※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허가 (2020.9.16.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원안가결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'20.09.24</p>

문화재명	소재지 (신청인)	사업내용	처리결과	처리일자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국보 제6호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</b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충북 충주 (○○○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탄금호 일원 상징조형물(포토존) 제작·설치(2차)</p> <p>○ 위치 : 충주시 중앙탑면(중앙탑 사적공원 일원)</p> <p>* 제1구역(문화재에서 120m, 260m, 390m 이격거리에 각 1개소)</p> <p>○ 사업내용 : 상징조형물(포토존) 3개소 설치</p> <p>&lt;1. 탄금호의 낭만-우륵의 가야금&gt;</p> <p>- 위치 : 중앙탑면 탑평리 2-3번지</p> <p>- 규격 : 2.5m(폭) * 1.2m(길이) * 3.1m(높이)</p> <p>* 문화재에서 거리 : 260.8m</p> <p>&lt;2.. 하늘을 나는 웨딩카&gt;</p> <p>- 위치 : 중앙탑면 탑평리 48-1번지</p> <p>- 규격 : 4.1m(폭) * 1.7m(길이) * 4m(높이)</p> <p>* 문화재에서 거리 : 298.3m</p> <p>&lt;3. 무지개 뜨는 러브레터&gt;</p> <p>- 위치 : 중앙탑면 탑평리 133-6번지</p> <p>- 규격 : 3.6m(폭) * 1.5m(길이) * 3.1m(높이)</p> <p>* 문화재에서 거리 : 389.9m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원안가결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‘20.09.24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보물 제219호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 입상</b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충남 논산 (○○○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정법궁 철거 후 대응보전 건립(변경허가)</p> <p>○ 위치 :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111</p> <p>* 보호구역 내</p> <p>○ 사업내용</p> <p>- 건축(연)면적 : 77.76㎡(면적동일)</p> <p>- 구조 : 목조</p> <p>- 지붕 : 팔작지붕</p> <p>- 규모/높이 : 지상1층/9.705m(기존 9.54m)</p> <p>- 변경사항</p> <p>· 높이변경 : 증0.165m</p> <p>· 기둥두께 변경</p> <p>· 건물위치 이동</p> <p>* ‘19년 제13차 문화재위원회 : 원안가결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원안가결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‘20.10.05</p>

문화재명	소재지 (신청인)	사업내용	처리결과	처리일자
보물 제323호 청도 봉기리 삼층석탑	경북 청도 (○○○)	<input type="checkbox"/> 동,식물관련시설(축사) 양성화 ○ 위치 : 청도군 풍각면 현리리 383번지 * 제4구역(보호구역에서 400m 이격) ○ 사업내용 - 대지면적 : 847㎡ - 건축(연)면적 : 98.43㎡ - 높이 : 5.4m - 구조 : 강파이프구조	원안가결	'20.10.05
보물 제823호 안성 석남사 영산전	경기 안성 (○○○)	<input type="checkbox"/> 석남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(재심의) ○ 위치 :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산26번지 * 보호구역 및 1구역 내 ※ 건축분과 문화재위원회('17.11.16.) : 원안가결 (허가기간 : '17.11.27.~'19.11.27.) ○ 사업내용 : 도로확포장 L=665m(변경없음)	조건부가결 (범면부 보강 및 경관 보호대책 수립)	'20.09.24
<b>구분</b>	<b>허가사항 ( '17년 7월 )</b>	<b>금차</b>		
포장공	<아스콘포장> 폭9m구간 100m 폭7m구간 565m	변동없음		
토공	흙깎기 2,200㎡ 흙쌓기 800㎡	<b>흙깎기 3,000㎡</b> <b>흙쌓기 955㎡</b>		
배수공	L형측구 : 565m 산마루측구 : 150m 배수관(D800) : 15m 집수정(2개소)	L형측구 : 565m <b>산마루측구: 503m</b> 배수관(D800) : 65m 집수정(5개소)		
구조 물공	식생옹벽블록(400㎡), L형옹벽(H=1.2m, L=30m), 암거(5m*2m, L=16m) 암거(5m*2m, L=10m) 등	자연석쌓기(639㎡), L형옹벽(H=1.2m, L=30m), 암거(5m*2m, L=16m) 등		

문화재명	소재지 (신청인)	사업내용	처리결과	처리일자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보물 제267호 임실 진구사지 석등</b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북 임실 (○○○)</p>	<p>□ 농막(1동) 설치(2차)</p> <p>○ 위치 : 임실군 신평면 용암리 229번지</p> <p>* 제1구역(문화재에서 210m 이격)</p> <p>○ 사업내용: 농막(1동) 설치</p> <p>- 대지면적 : 2,624㎡</p> <p>- 농막면적 : 19.84㎡(6.2m*3.2m)</p> <p>- 재질 : 철골프레임(컨테이너)</p> <p>※변경사항 : 컨테이너 내부 주방(싱크대 설치) 시설 제외</p>	<p>조건부가결 (존치기간 연장 신고시 문화재 보호법 관련 재허가를 득할 것.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‘20.09.24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보물 제614호 사천 홍사리 매향비</b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경남 사천 (○○○)</p>	<p>□ 양봉시설 신축 및 부지조성</p> <p>○ 위치 : 사천시 곤양면 홍사리 산45-17</p> <p>* 제2구역(문화재에서 200m 이격)</p> <p>○ 사업내용</p> <p>- 양봉시설 5동 신축</p> <p>· 대지면적 : 4,577㎡</p> <p>· 건축면적/연면적 : 1,162.8㎡</p> <p>· 최고높이 : 4.7m(1층)</p> <p>· 구조 : 일반철골구조</p> <p>- 부지조성</p> <p>· 진입도로 개설 : 421㎡</p> <p>· 토공 : 흙깎기 3,936㎡, 흙쌓기 5,169㎡, 터파기 75.8㎡, 되메우기 39.1㎡, 순성토 1,208㎡, 법면보호공 1,233㎡</p> <p>· 구조물공(전석쌓기) : L=145.3m, A=361.2㎡, H=3.1m</p> <p>· 배수공 : 플룸관 460m, pe배수관 16m, 산마루측구 125.5m, 집수정 3개소</p> <p>· 포장공 : 콘크리트포장 395.5㎡</p>	<p>부결 (역사문화 경관 저해 - 절·성토량 과다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‘20.09.24</p>